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5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머 리 말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한 세계적인 보험그룹 AIG의 파산 위기를 계기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산업의 금융안정성을 진단하였는데, 전통적인 보험영역은 금융시장이나 경기변동과 관련이 없으나 비전통적 보험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 보험영역이 소유관계 등으로 보험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을 때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즉, 기존의 보험감독이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초점이 있었다면 최근의 논의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금융의 복합화가 금융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세계 금융산업의 변화 추세에 따라 금융복합화의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권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논의가 가열되고 있고, 관련된 기업 및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건전성 감독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원칙과 해외의 그룹단위 건전성 감독기준을 검토하여 현재 그룹단위감독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3년 5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5

1. 연구배경 / 15
2. 선행연구 / 20
3. 연구방법 및 구성 / 22

II.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 / 24

1. 금융그룹의 정의 / 24
2. 그룹감독의 필요성 / 34

III. 해외의 보험그룹 감독체계 / 41

1. 그룹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 41
2. EU의 보험그룹감독 / 56
3. 미국의 보험그룹 감독 / 67
4. 일본의 보험그룹 감독 / 71

IV.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 74

1. 재무건전성 규제 및 감독 현황 / 74
2.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의 진단 및 평가 / 77

V.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 82

1. 그룹단위 감독체계 수립 / 82
2.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자본 평가 / 84
3. 상시감독수단으로서의 ORSA 도입 / 86

|참고문헌| / 88

■ 표 차례

- 〈표 Ⅱ-1〉 국내 금융지주회사 현황(2012년 12월 현재) / 32
- 〈표 Ⅲ-1〉 공동포럼의 금융그룹감독원칙 / 43
- 〈표 Ⅲ-2〉 EU Solvency Ⅱ와 Basel Ⅲ의 가용자본 구성 / 60
- 〈표 Ⅲ-3〉 EU Solvency Ⅱ 제5차 계량영향평가: 보험그룹의 규모별 분포 / 62
- 〈표 Ⅲ-4〉 미국의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의 의제 / 69
- 〈표 Ⅲ-5〉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혁 방향 / 70
- 〈표 Ⅲ-6〉 일본의 보험회사 그룹경영에 관한 최근 주요 제도 개정 / 72
- 〈표 Ⅳ-1〉 국내 보험그룹 재무건전성 감독의 진단 및 평가 / 81

■ 그림 차례

- 〈그림 I-1〉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과 그룹감독에서 제기된 이슈들 / 16
- 〈그림 II-1〉 IAIS의 보험그룹 예시 / 26
- 〈그림 II-2〉 국내 지주회사 근거법 / 29
- 〈그림 II-3〉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 31
- 〈그림 II-4〉 모·자회사 형태의 보험그룹 / 34
- 〈그림 II-5〉 금융그룹이 노출되는 위험 / 39
- 〈그림 III-1〉 보험그룹 형태에 따른 IAIS의 감독방식 / 45
- 〈그림 III-2〉 IAIS 그룹감독체계(GSF) / 48
- 〈그림 III-3〉 IAIS 그룹감독체계의 감독 검토 및 보고 / 49
- 〈그림 III-4〉 공통감독체계(ComFrame) 개념도 / 52
- 〈그림 III-5〉 공통감독체계(ComFrame) 구조 / 53
- 〈그림 III-6〉 글로벌 보험그룹(IAIGs) 식별 절차 / 54
- 〈그림 III-7〉 공통감독체계(ComFrame) 모듈2 및 모듈3 / 54
- 〈그림 III-8〉 보험회사의 지급능력평가 / 58
- 〈그림 III-9〉 EU Solvency II의 요구자본에 대응하는 가용자본 구성 / 61
- 〈그림 III-10〉 EU Solvency II의 보험그룹 요구자본 산출 / 61
- 〈그림 III-11〉 보험그룹의 잉여자본 변동 / 64
- 〈그림 III-12〉 보험그룹의 위험별 분산효과 / 65
- 〈그림 III-13〉 분산효과 예시 / 66
- 〈그림 IV-1〉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규제 및 감독 현황 / 74
- 〈그림 IV-2〉 보험지주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틀 / 75
- 〈그림 IV-3〉 공동포럼이 제시한 지급능력평가 / 77
- 〈그림 IV-4〉 국내 금융지주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방향 / 79

A Study on the Prudential Supervision Framework of Korean Insurance Groups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home to financial supervisors the importance of concerted efforts of international and inter-sector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upervisors in charge of global insurance groups.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group-wide supervision framework with enhanced prudential supervision on global financial groups has received renewed spotlights. This study is based on similar sentiments of searching for a better way to supervise Korean insurance groups focusing on the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After thorough reviews on principles and on-going discussions on group-wide supervision and prudential regula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inancially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current financial supervision o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n Korea, we suggest three policy changes; the construction of group-wide supervision framework, consideration of group characteristics in assessing available capital and risks, and introduction of ORSA in order to allow tailor-made risk management by insurance groups.

Especially, for the improvement of prudential regulation of insurance groups in Korea, first, an insurance group should be treated as an economic entity and group-wide supervision framework should be introduced in capital regulation of insurance holding companies. Second, group-wide consolidation including non-financial manufacturing subsidiaries should be used in capital adequacy assessment of insurance groups to reflect group's true risks and available capital.

Finally, diversification effects and quality of capital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evaluating group-wide capital adequacy.

요 약

I.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에서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구체적 개혁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음.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그룹감독에 관한 원칙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에 관한 구속력 있는 별도의 국제기준으로 공통감독체계를 개발 중임.
 - 또한 2014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유럽 Solvency II 규제체계에서도 개별회사단위 감독과 함께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을 비중 있게 다룸.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그룹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파악하여 그룹단위로 감독하는 그룹단위감독체계가 아님.
 -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건전성 규제는 그룹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자기자본규제는 보험그룹의 이점인 리스크의 분산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그룹단위감독은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국내 금융그룹감독에 접목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
- 본 보고서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의 도입방안과 그룹단위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논의를 전개함.
 - 특히 보험그룹의 그룹단위 재무건전성 감독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한 국내 보험그룹 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범위는 보험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보험그룹에 집중하여 이들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에 초점을 맞춤.

II.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

1. 금융그룹의 정의

가. 금융그룹의 일반적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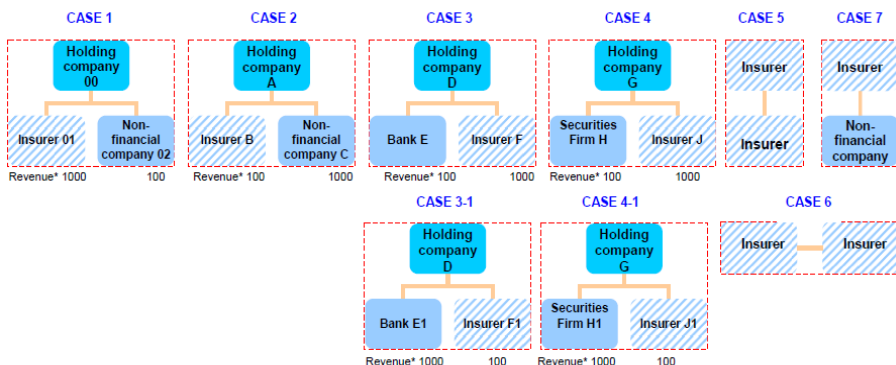
- 유럽에서는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을 금융업 인가를 가진 회사가 모회사인 그룹 또는 그룹의 자회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사가 금융업 인가를 가진 그룹으로 정의함.

○ 이들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단위감독을 개별기업 감독과 보완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함.

- 미국에서 금융그룹은 1999년 금융현대화법(GLB Act of 1999)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은행지주회사가 다양한 금융업종의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를 의미함.

○ 금융지주회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의 영위가 가능함.

〈요약 그림 1〉 IAS의 보험그룹 예시



자료: 그림 23.1,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23.2.4.

나. 보험그룹의 일반적 정의

- IAIS는 보험핵심원칙 23장 그룹단위감독에서 둘 이상의 회사 중 적어도 한 회사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험그룹을 정의함.
 - IAIS는 〈요약 그림 1〉의 Case 7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그룹으로 정의함.
 - 그룹감독의 대상인 보험그룹에는 보험그룹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회사들이 포함됨.

다. 국내 금융그룹 및 보험그룹

-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은 크게 금융지주회사와 모·자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보험그룹 역시 보험지주회사와 모·자회사의 형태를 가지나 현재 보험그룹으로서의 규제는 보험지주회사만 받고 있음.
 - 보험을 비롯한 모·자회사의 형태의 비은행그룹은 주로 기업집단 계열에 속해 있음.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함.
 - 보험지주회사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음.

2. 그룹감독의 필요성

가. 금융그룹 구조의 장점

-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회사는 정보기술과 고객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외형성장 및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비해 유리함.

- 지주회사는 특정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기가 용이하여 시장 상황에 맞추어 순발력 있는 대응이 가능함.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경영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계열사 간 출자 관계와 같은 소유지배구조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단순해지고 이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이 용이해짐.

나. 금융그룹 구조의 단점

- 지주회사는 소규모의 자기자본으로 여러 단계의 자회사 지분소유를 거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장이 가능하여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특히 산업자본의 보험·금융회사 소유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금융지주회사의 행위를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음.
- 금융그룹 전체의 집중리스크의 문제와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그룹 내 자회사 간의 리스크 전이 등을 통해 그룹 전체가 부실해질 우려도 상존함.
 - 보다 거시적으로는 금융그룹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도 내포함.
- 금융그룹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음.
 - 조직구조 측면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의 상충으로 의사결정 및 경영지원에 있어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함.

Ⅲ. 해외의 보험그룹 감독체계

1. 그룹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가. 공동포럼(Joint Forum)의 금융그룹감독원칙

- 공동포럼의 금융그룹감독원칙은 금융그룹 감독을 크게 감독자의 권한, 감독자의 책임,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위험관리 측면에서 제시함(〈요약 표 1〉 참조).

〈요약 표 1〉 공동포럼의 금융그룹 감독 원칙

구분	금융그룹 감독 원칙
감독자의 권한	1. 포괄적 그룹감독; 2. 협력과 정보교환; 3. 독립성과 책임 명시; 4. 감독자원
감독자의 책임	5. 그룹감독자; 6. 감독자 간 협력; 7. 건전성 기준과 범위; 8. 감시 및 감독; 9. 감독수단과 강제
기업지배구조	10.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11. 금융그룹의 구조; 12. 임원 등의 적격성; 13. 지주회사 이사회 책임; 14. 보수
자본적정성	15. 자본적정성 요구; 16. 그룹의 자본적정성평가; 17. 자본의 이중계상 고려; 18. 과도한 레버리지 고려; 19. 내부 거래 고려
유동성	20. 지주회사 유동성 고려
위험관리	21. 독립성, 포괄성, 효과성; 22. 위험관리문화; 23. 위험허용한도; 24. 신사업의 위험평가; 25. 아웃소싱; 26. 위기상황분석; 27. 위험통합; 28.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 29. 부외거래

자료: Joint Forum(2011).

나. IAIS의 보험그룹 감독방식

- IAIS는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을 크게 보험핵심원칙(ICPs) 중 그룹단위감독에 관한 원칙, 글로벌 보험그룹 공통감독체계(ComFrame),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SIIs)의 선정 및 감독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 있음.

- 2011년 개정된 보험핵심원칙을 통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험그룹감독의 틀을 새롭게 제시함.
- 또한 201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IAIGs)에 대한 국제적이고 공통되는 감독기준 성격의 공통감독체계(ComFrame)를 구축 중임.
- 그리고 IAIS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에 대한 선정기준 및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임.

〈요약 그림 2〉 보험그룹 형태에 따른 IAIS의 감독방식

그룹형태	보험그룹	IAIGs	G-SIIs (=IAIGs)	G-SIIs≠IAIGs (미혼상 가능)
제1단계	그룹단위감독 보험핵심원칙			
제2단계		ComFrame		
제3단계			G-SIIs 규제	

자료: IAIS(2012, 7).

2. EU의 보험그룹감독

■ EU는 보험지주회사의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적 규제를 위하여 ‘보험지주회사의 감독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그룹감독의 초점은 그룹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급여력과 위험관리, 그룹 내 거래로 인한 내부 위험관리에 맞추어짐.
- 보험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각 회원국 간의 정보의 교환과 감독공조 등에 대한 규정을 강조함.

- EU Solvency II는 보험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보험그룹 전체를 하나의 경제 주체로 취급하며,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자회사 여부를 판정함.
 - EU는 별도의 자산운용규제 없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자기자본규제를 통해서 접근함.
- EU Solvency II는 자본계층화로 자본의 질이 낮은 경우, 보험회사가 요구자본을 초과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급능력이 낮다고 평가함.
 - EU Solvency II는 자본의 손실보전능력을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함.
- EU Solvency II는 각 위험요소끼리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합산함으로써 그룹 내 분산효과를 반영함.
 - 지주회사와 지분율로 통제가 가능한 보험회사군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간주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다른 금융자회사와 지분율은 낮지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회사의 요구자본을 별도로 산출함.
- 보험그룹에 대한 5차 계량영향평가에 의하면, 보험그룹의 지급여력비율은 EU Solvency I 대비 하락했으나, 그룹 전체 요구자본은 개별 자회사 요구자본의 단순 합산치보다 감소함.
 - 지급여력비율의 하락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적용으로 그룹의 가용자본이 하락하고 EU Solvency I 대비 요구자본은 증가한데 기인함.
 - 그러나 보험자회사의 요구자본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산출됨으로써 단순 합산치 대비 요구자본의 경감효과도 나타남.

3. 미국의 보험그룹 감독

- 미국의 보험그룹 감독은 연방이 아닌 주별 감독으로全美보험감독자협의회 (NAIC)에서 모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각 주에서 채택하는 형태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통적인 보험감독체계를 유지함.
 - NAIC는 1969년 보험지주회사 모델법을 제정한 이래 이를 각주에 권고하여 그룹감독의 틀을 형성함.
-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혁 작업(SMI)을 추진하고 있음.
 - NAIC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체계를 재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보험감독 및 은행감독, 회계 부문의 국제적 논의를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에 반영하기 위한 SMI 로드맵을 마련함.
- NAIC는 지급능력평가와 상시감독의 개선방향을 규제보다는 감독에 초점을 두고 접근함.
 - 상시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감독목적의 전사적 위험관리(ORSA)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 중임.
 - 또한 2010년 보험지주회사 모델법규를 개정하고 투명성 확보와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Windows and Walls” 개념을 도입하여 감독협의체 구성과 모니터링 수단 강화에 주력함.

4. 일본의 보험그룹 감독

- 일본의 보험그룹 감독은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1998년 연결 기준 공시제도 정비, 2008년 이해상충 관리체제 구축, 2010년 연결 재무 건전성 기준 도입 등을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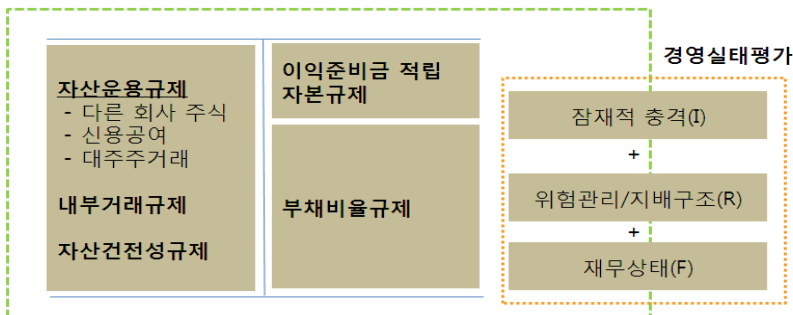
- 연결 재무건전성 기준 도입으로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보험그룹 전체를 하나로 연결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함.
 - 금융 위기의 교훈으로써 그룹 내 업체의 경영 악화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10년 5월에 도입하여 2012년 3월부터 적용함.
- 보험지주회사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 그룹에서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가 없으나, 개별 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적용함.

IV.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1. 재무건전성 규제 및 감독 현황

-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들 간 리스크 전이와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자기자본규제와 함께 이에 대한 상시감독(FRI)을 통해 수행됨.

〈요약 그림 3〉 국내 보험지주회사 건전성 감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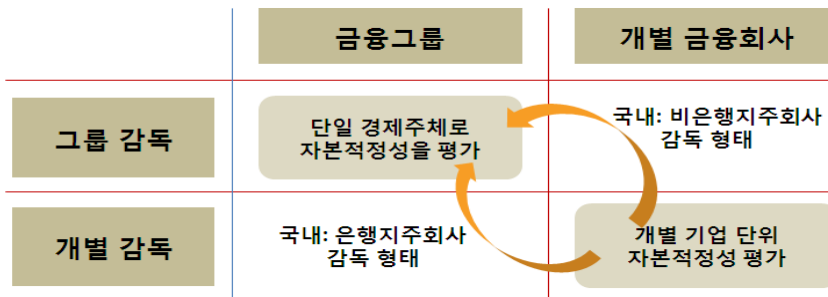


-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자산운용규제와 자본규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운용에서는 자회사와 더불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됨.
-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지주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등과의 불공정거래와 부실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지주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규제함.

2.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의 진단 및 평가

-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자본규제는 금융그룹 지급능력평가에 관한 공동포럼에서 제시한 틀을 준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별기업 단위의 접근방식에 머물러 있음.
-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시 그룹 내 각 금융업권별 자본규제에 따라 산출된 요구자본을 단순 합산함.
-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요구자본은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적용하고 있어 외형상 단일 기준에 따라 요구자본이 산출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국내 지주회사의 자본규제는 은행과 비은행이라는 지주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고 있을 뿐 경제적 실체를 구분하지 않아 그룹이 노출된 리스크양은 과소 또는 과다 산출됨.

〈요약 그림 4〉 국내 금융지주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형태



자료: IAIS ICP23의 감독 형태를 수정 인용함.

■ 향후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그룹 내 경제적 단위에 따라 평가되고, 그룹 내 비금융회사가 그룹에 미칠 리스크도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자본규제가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와 보험회사 등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그룹 내 다른 금융업이나 비금융자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EU Solvency II의 모델을 검토함.

■ 보험지주회사의 상시감독은 그룹이 자체적으로 그룹 운영에 필요한 적정 자본을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전사적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ORSA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EU Solvency II와 미국 SMI 등 해외의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혁작업들의 주요 특징 역시 ORSA를 상시감독수단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음.

〈요약 표 2〉 국내 보험그룹 재무건전성 감독의 진단 및 평가

	기준	목표	비고	평가
그룹 감독 체계	그룹단위	경제적 실체로서의 그룹	개별 + 그룹 동시 감독	△
	그룹감독 조직	그룹감독자 지정, 감독협의체 구성	정보공유 + 협력	×
	비금융 자회사	보험회사에 리스크 노출이 있으면 감독에 편입	정보접근, 검사	△
자본 평가	가용자본	연결기준 가용자본 산출	연결기준	△
		비지배지분 가용성 평가 등 자본의 질을 반영	가용성 + 대체성	×
	요구자본	분산효과 반영한 그룹 전체 위험량 산출	분산효과	×
전사적 위험관리 평가	전사적 위험관리(ERM)	그룹 자체의 위험 평가와 적정 자본 관리	미래지향적 위험관리	△
	감독목적 ERM 시행 및 보고	ORSA 기준 마련	—	×
	감독체계	보고내용의 효과적 평가와 감독	—	×

주: △은 현재 시행 중이나 그룹감독 기준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재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은 그룹단위 평가에 필요한 틀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본 및 리스크관리 평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V. 보험지주회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

1. 그룹단위 감독체계 수립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감독은 개별회사에 대한 감독에 치우쳐 그룹단위감독에 대한 틀이 미비한 상태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됨.
 - 또한 EU의 Solvency II 등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룹단위감독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험지주회사 등의 감독에서 보험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그룹단위 감독체계를 도입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임.
 - 금융정책 입안자는 효과적인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그룹감독자들의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고, 감독당국은 보험지주회사의 그룹단위 감독자의 지명과 관련 감독자들 사이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2.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자본 평가

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그룹단위 자기자본 규제

-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도 금융그룹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규제는 금융업권별 자기자본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개별 금융회사 단위의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그대로 사용함.
 - 특히 비은행지주회사의 자본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감독 형태여서 이를 그룹단위감독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나. 연결기준에 의한 자기자본 산출

- 금융그룹의 요구자본은 그룹 전체가 가지는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고, 가용자본의 경우에도 다중계상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룹단위 연결기준 사용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자본산출방법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까지 연결하여 보험그룹을 하나로 보는 연결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다. 자본산출방식의 개선

- 우리나라도 지급능력 평가 시 이와 같은 분산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고려하여 보험지주회사의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함.
 - 분산효과를 고려한 요구자본 산출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대형사를 중심으로 자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지급능력 평가를 위한 가용자본의 산출에 있어서도 대체성과 가용성을 고려한 자본의 질을 고려함.

3. 상시감독수단으로서의 ORSA 도입

- ORSA는 보험회사가 미래지향적으로 자사의 핵심 위험을 파악하고 경영 유지에 필요한 적정 자본 수준을 판단하는 일련의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체계임.
 - 최근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RBC제도가 표준모형에 의한 일률적 규제에서 개별 보험회사의 내부 위험관리모형을 인정하는 내부모형제도도 허용하는 변화와 일맥상통함.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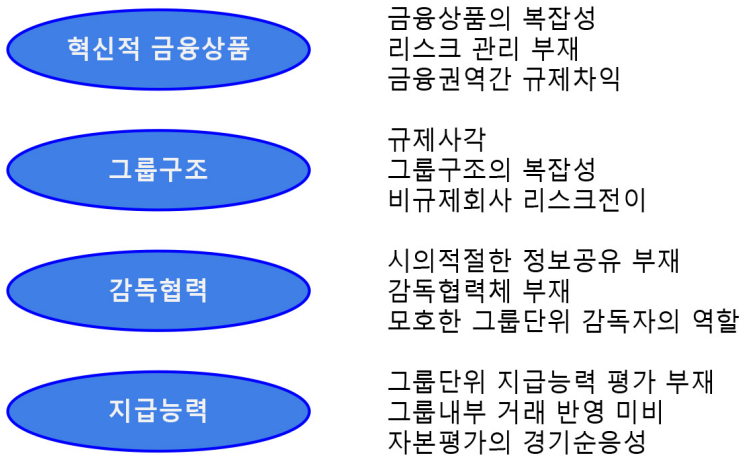
1. 연구배경

가. 금융위기 이후의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개혁

- 세계 금융시장에서 금융그룹 형태의 금융 복합화와 겸업화 추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들 금융그룹에 대한 적절한 그룹 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권역 간 규제차익, 비규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등 규제사각의 문제, 금융그룹 감독자들 사이의 협력 및 정보교환체계 미비 등 기존 그룹감독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투자은행의 실패 사례와 함께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보험그룹의 실패 사례¹⁾는 보험권역에서도 그룹단위감독의 중요성을 제고시킴.
- 이에 따라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에서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구체적 개혁방안이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모색되고 있음.
 - 특히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글로벌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관한 논의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많은 진전을 이룸.

1) American International Group(AIG)는 CDS거래, MBS투자 및 공격적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손실로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로부터 1800억 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받음(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

〈그림 I-1〉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과 그룹감독에서 제기된 이슈들



자료: IAIS(2011).

■ FSB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선정²⁾을 끝내고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방안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G-SIBs는 부실화될 경우 그 부실이 전이되어 국제적인 금융시스템과 더 나아가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은행을 의미함.
- 또한 G-SIBs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으로 확장하는 논의도 진행 중임.
 - D-SIBs는 부실화될 경우 부실의 전이가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은행을 의미함.

■ 또한 보험권역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의 선정 및 규제방안과 함께 보험그룹 감독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³⁾

2) FSB(2011, 2012).

○ G-SIIs에 이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보험회사(D-SII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지정 및 규제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그룹단위감독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그룹감독에 관한 보험감독원칙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에 관한 구속력 있는 별도의 국제기준을 논의 중임.

○ IAIS는 보험핵심원칙(ICPs: Insurance Core Principles)을 개정하면서 그룹감독에 관한 보험감독원칙을 대폭 보강하여 재정비하고 지난 201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발표한 바 있음.

■ 보험핵심원칙의 개정과 함께 IAIS는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선정 기준, 그룹단위감독, 감독자 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규율하는 국제기준으로서 공통감독체계(ComFrame)⁴⁾를 개발 중임.⁵⁾

○ 동 기준은 향후 은행권역의 바젤협약과 같이 국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험그룹감독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⁶⁾

■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동포럼(Joint Forum)이 2011년 12월

3) 2012년 5월 31일과 10월 17일 G-SIIs 선정방법(IAIS 2012, 5)과 규제방안(IAIS 2012, 10)을 담은 보고서를 각각 발표하였음.

4)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의 약어이며, 여기서 글로벌 보험그룹을 의미하는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는 IAIGs라는 약어로 통용됨.

5) 공통감독체계의 구축은 2013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2일에 제2차년도 공통감독체계 초안(Working Draft)을 발표하였음.

6) 1988년에 시작된 은행권역의 바젤 1은 글로벌 은행 규제의 국제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2004년에 개정된 바젤 2에서는 전 은행산업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에 발표한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원칙⁷⁾에서도 나타남.

- 공동포럼의 금융복합그룹감독원칙은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다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그룹에 대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2014년부터 시행이 예정⁸⁾된 유럽 Solvency II 규제체계에서도 개별회사단위 감독과 함께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⁹⁾

- 그룹단위에서의 지급능력 평가, 보험그룹 내부의 리스크 전이문제, 감독 협의체 및 감독협력의 문제 등이 Solvency II 체계에서 논의되고 있음.
- 이에 앞서 유럽은 2002년 금융복합그룹지침¹⁰⁾에서 개별업권 감독에 보완적 감독으로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을 명시함.

다.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그룹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¹¹⁾로 파악하여 그룹단위로 감독하는 그룹단위 감독체계가 아님.

-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건전성 규제는 개별 금융기업 위주로 치우쳐 있으며 그룹감독에 있어서 금융그룹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
- 특히, 자기자본규제는 단순합산 방식으로 보험그룹의 이점인 다각화에서

7) Joint Forum(2011).

8) 그러나 Solvency II의 실행은 당초 예정된 2014년에서 연기될 것으로 보임.

9) European Union(2009), Solvency II Directive, Title III, Supervision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in a Group.

10) Directive 2002/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2 on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Insurance Undertakings and Investment Firm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11) 경제적 실체로서의 금융그룹이란 금융그룹 내의 각 금융회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주회사 또는 본부(headquarter)의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하나의 금융그룹이 마치 하나의 실체처럼 운영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오는 리스크의 분산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그룹의 상시감독에 있어서도 개별 금융기업 경영실태평가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그룹단위감독은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 금융그룹감독에 접목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

-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 권역별·국가별로 산재해 있는 금융그룹 내 소속 회사들에 대한 관련 감독자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 및 정보공유의 부재가 감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의 도입은 금융그룹 소속 회사의 관련 감독자들 간의 유기적 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함.

■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감독체계도 금융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파악하여 그룹단위로 감독하고 개별 금융기업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¹²⁾

- 그룹 전체의 감독에 책임을 갖는 그룹단위 감독자와 관련 자회사 감독자들 간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그룹단위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또한 그룹 내 비보험·비금융 자회사 등 보험규제 및 감독을 받지 않으나,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그룹감독에 반영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의 도입방안과 그룹단위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방안을 보험지주회사에

12) IAIS의 ICP 23은 보험회사를 개별회사 및 그룹단위로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보험그룹의 그룹단위 재무건전성 감독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한 국내 보험그룹 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금융의 겸업화 및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 그룹단위감독 및 연결기준 재무건전성 규제의 도입은 리스크의 전이를 미연에 차단하여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임.

2. 선행연구

가. 금융지주회사제도 관련 연구

- 이진범·김우진(2005)은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및 현황과 해외 금융지주회사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금융지주회사 중 보험지주회사의 등장에 필요한 규제의 변화를 논의한 연구에는 안철경·민세진(2006), 안철경·이상우(2006), 정재욱·이석호(2009), 김흥기(2010)가 있음.
 - 안철경·이상우(2006)는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
 - 국내 지주회사제도의 현황 및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살펴보고, 미국, 일본, 유럽의 보험지주회사제도 및 운영사례를 소개함.
 - 안철경·민세진(2006)은 금융권역 간 차이를 인정한 금융지주회사 규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은행지주회사와 차별되는 보험지주회사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함.
 - 반면, 정재욱·이석호(2009)는 보험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설립

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논거를 제시함.

－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및 감독의 연장선상에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함.

○ 김홍기(2010)는 2009년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과 같은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와의 정합성 등의 의미를 살피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신보성·송홍선(2008)은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규제와 관련하여 은행지주회사와 차별화된 금융투자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선 방안과 금융투자지주회사 도입 시의 원칙 등을 제시함.

나.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연구

■ 김정렬(2003)과 이민환·전선애·최원(2009)은 금융지주회사의 출현으로 인한 금융그룹감독과 관련하여 BIS 등의 감독원칙을 소개함.

○ 김정렬(2003)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및 감독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함.

○ 이민환·전선애·최원(2009)은 금융그룹이 노출된 리스크를 유형별로 살피고, 해외의 금융그룹 규제 및 감독 현황과 특징을 제시하고 공동포럼(Joint Forum)¹³⁾이 제안한 감독원칙을 상세하게 소개함.

■ 송옥렬(2010)은 법적 형태에 따라 금융기업이 노출된 위험의 전염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감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주장함.

○ 법인격을 지닌 자회사로 이루어진 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겸업화와 유럽형

13) 은행(BCBS), 증권(IOSCO), 보험(IAIS) 권역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가 모여 금융복합그룹 등 모든 금융권역에 공통적인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1996년 설립함.

회사 내 금융점업 간 차이가 없음.

- 사내점영이나 지주회사 모두 리스크의 전이는 일어날 수 있으며, 지주회사체계가 차단벽이나 이해상충의 방지에 더 낫다고 볼 수 없음.

■ 본 연구는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도입방안과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그룹단위 재무건전성 규제 및 감독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기여가 있음.

- 선행연구는 주로 은행지주회사를 위주로 금융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방안을 고찰하거나 또는 해외 금융복합그룹의 사례 위주로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 방안을 소개하고 있음.
- 특히 이 연구는 보험그룹의 그룹단위감독의 도입방안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감독 체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음.

3. 연구방법 및 구성

■ 본 보고서는 보험그룹의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도입 방안과 보험그룹의 그룹단위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논의를 진행함.

- 향후 우리나라 보험그룹의 감독은 형식 면에서 그룹단위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내용 면에서 지급능력제도와 같은 재무건전성 규제를 그룹단위 연결감독 체계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시함.
 - 이를 위해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도입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시된 원칙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우리나라 보험그룹 감독체계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또한 EU Solvency II 에서와 같은 그룹단위 재무건전성 규제를 통한 보험그룹 자본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금융그룹에 집중하여 이들에 대

한 그룹단위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며,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모·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 규제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둠.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규제 문제는 금융회사로서의 규제뿐 아니라 금산분리 및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 등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 본 보고서는 보험지주회사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도입과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의 개선을 주제로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과 더불어 그룹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 살펴봄.
- 제3장에서 국제기구의 보험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원칙을 살피고, 유럽의 Solvency II와 미국의 지급능력현대화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일본의 그룹감독 개선작업 등을 살펴봄.
- 제4장에서는 국내 지주회사 감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 국내 보험그룹의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그룹단위감독의 필요성

1. 금융그룹의 정의

가. 금융그룹의 일반적 정의

- 금융그룹이란 일반적으로 “공동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서로 다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의 집단을 말함.¹⁴⁾
 - 여기서는 유럽과 미국의 금융그룹 감독체계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여 고찰함.
- 유럽에서는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을 금융업 인가¹⁵⁾를 가진 회사가 모회사인 그룹 또는 그룹의 자회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사가 금융업 인가를 가진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음(EU 금융그룹지침 2장 14조(a), 2002).
 - 그룹이란 모회사, 자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 그리고 그 밖에 연결기준에 포함되는 회사 등을 포괄함.
 - 특히 비규제회사가 모회사인 경우,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아우른 그룹 전체 대차대조표상 자산 중 금융업의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함.
 - － 규제회사는 은행, 금융투자업, 또는 보험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의미함.

14) 송옥렬(2010).

15) 여기서 금융업 인가를 가진 회사는 각 금융권역을 규율하는 지침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은행 인가를 받은 회사를 의미함.

- 또한 EU 금융그룹지침은 금융그룹이 반드시 보험업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은행과 금융투자업을 합한 비중과 보험업의 비중이 각각 1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같이 은행업이 지주회사 전체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유럽에서는 금융그룹으로 간주되지 않음.

- EU 금융그룹지침은 이들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단위감독을 개별기업 감독과 보완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5장 보완적 감독의 범위).
 - 보완적(complementary) 감독이란 그룹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감독(solo supervision)을 그룹단위감독을 통해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진.
 - － 보완적 그룹감독의 범위에는 모회사, 자회사, 그리고 연결기준의 모든 관련회사가 포함됨.
 - 이러한 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은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리스크 집중, 그룹 내부거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절차 등이 포함됨.

- 미국에서 금융그룹은 1999년 금융현대화법¹⁶⁾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은행지주회사가 다양한 금융업종의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를 의미함.
 - 금융현대화법에 따라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¹⁷⁾과 1956년의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왔던 은행의 금융투자 및 보험관련 업무가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를 통해 가능해짐.
 -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 상태(well-capitalized)와 경영 상태

16) Gramm-Leach-Bliley Act of 1999는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Section 4의 확장을 통해 financial holding company를 통한 은행의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업무영역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 밖에 기능적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7) 1933년 은행지주회사법의 20장과 32장을 폐지함.

(well-managed)가 양호하고, 지역재투자법(CRA) 평가에서 만족(satisfactory)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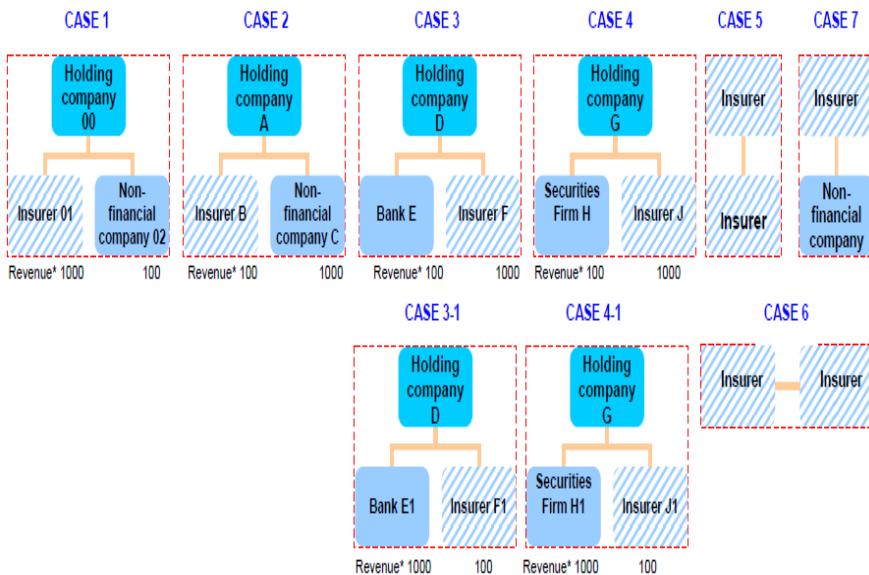
■ 금융지주회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금융업무(financial in nature) 및 부수업무(incidental to such activity)의 영위가 가능함.

○ 금융 및 부수업무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와 보험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겸영을 폭넓게 허용함.

나. 보험그룹의 일반적 정의

■ IAIS는 보험핵심원칙 23장 그룹단위감독에서 둘 이상의 회사 중 적어도 한 회사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험그룹을 정의하고 있음.

〈그림 II-1〉 IAIS의 보험그룹 예시



자료: 그림 23.1,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23.2.4.

- IAIS는 2011년 10월 서울 총회에서 채택된 보험핵심원칙(ICPs: Insurance Core Principles)에서 보험그룹을 정의함.
- IAIS는 〈그림 II-1〉의 Case 7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그룹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Case 1~Case 4까지는 지주회사 형태의 보험그룹
 - Case 5~Case 6은 모·자회사 형태의 보험그룹

■ 그룹감독의 대상인 보험그룹에는 모든 관련회사들¹⁸⁾이 포함되며, 보험회사와의 연관성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ICP 23.2).

- 영업 및 비영업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포함
- 보험회사: 자매회사 또는 자회사
- 은행 및 증권회사와 같은 다른 금융권역의 회사
- 규제 및 감독을 받지 않는 관계회사(이하 비규제 회사): 모회사, 자회사 및 그룹 내 회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 포함
- 특수목적법인

다. 국내 금융그룹 및 보험그룹

■ 우리나라의 금융그룹은 크게 금융지주회사와 모·자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은행그룹은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를, 보험을 비롯한 비은행그룹은 주로 모·자회사의 형태로 기업집단 계열에 속해 있음.¹⁹⁾

- 모·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회사 단위의 권역별 감독만을 받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의 의한 감독을 받고

18) 본 보고서에서 관련회사란 보험그룹에 리스크를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룹단위 감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회사를 의미함.

19) 은행지주회사는 모두 금융지주회사 형태이며, 비은행지주회사로는 보험지주회사인 메리츠금융지주와 금융투자지주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있음.

는 있으나 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감독하는 그룹단위감독은 아님.

- 국내 보험그룹도 크게 보험지주회사와 모·자회사의 형태를 가지나 현재 보험그룹으로서의 규제는 보험지주회사만 받고 있음.
 - 메리츠금융지주가 보험을 주된 자회사로 갖는 유일한 보험지주회사이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금융지주 등 여타 은행지주회사도 모두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지는 보험그룹으로 볼 수 있음.
 - 모·자회사 형태의 보험그룹은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다수 존재함.
 -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의 경우, 개별 회사단위 감독만 규율할 뿐 보험회사가 금융그룹의 일부인 경우 등 그룹감독의 개념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1)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

-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기 시작하였음.
 - 1999년 지주회사 설립 허용 전까지는 1986년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 및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한 바 있음.²⁰⁾
 -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기업집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통한 외자유치를 위해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지주회사가 허용됨.

20) 공정거래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1차 개정 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금지(제7조의2), 상호출자의 금지(제7조의3), 출자총액의 제한(제7조의4),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제7조의5) 등과 같은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신설함.

-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를 담음.
 - 제정 당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이었던 금융지주회사법은 2009년 개정으로 공정거래법과 분리됨(김홍기 2010).
 -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 등을 통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주안점에 두고 일반지주회사를 규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순수지주회사인 금융지주회사를 규율하는 체계가 마련됨.
 - －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따름(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음(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림 II-2〉 국내 지주회사 근거법

	사업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개별 금융회사
금융업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겸업	-
제조업	-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법

- 지배란 회사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계열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함.
- 주된 사업이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2 이상인 것을 의미함.
- 또한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영역을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 부수업무²¹⁾로 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는 금지함으로써 순수지주회사만을 인정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보험지주회사로 정의함(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6의3호).

- 여기서 비은행지주회사란 은행을 포함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이며, 은행을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와 구분됨.
- 비은행지주회사는 다시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로 나눌 수 있음.
 - －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은행과 보험회사를 포함하지 않고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함.
- 즉,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은행을 포함하면 은행지주회사, 은행 없이 보험회사를 포함하면 보험지주회사, 은행과 보험회사 없이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하면 금융투자지주회사로 정의함.

■ 보험지주회사 역시 순수지주회사이어야 하지만,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제조업 등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²²⁾가 적용됨.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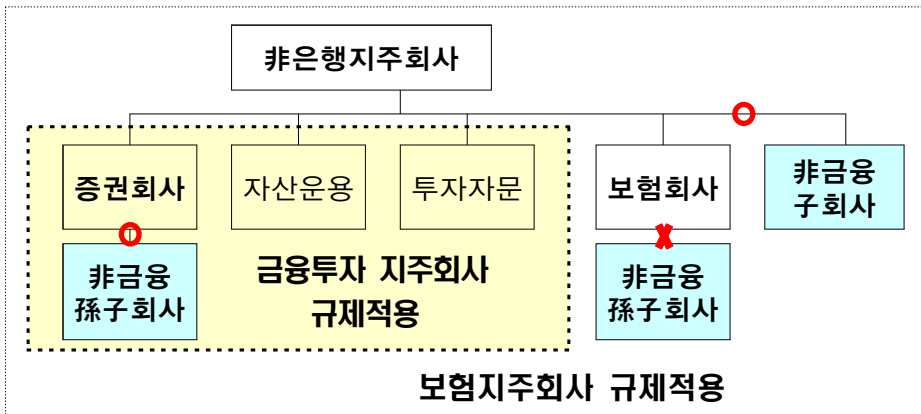
21)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는 자금지원, 출자 또는 자금지원을 위한 조달, 공동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과 전산, 법무, 회계 등 업무지원을 위해 위탁받은 업무 등을 포함함.

22) 시스템리스크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비은행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의 차이를 인정하여 2009년 법 개정 시 반영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규제수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함(금융위원회 2008).

○ 그러나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 회사 보유 등을 허용하였음.

- 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자회사를 통한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보유는 금지함.
-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자회사주식보유기준²³⁾을 따라 상장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비금융자회사는 20%, 비상장 비금융자회사는 4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함.

〈그림 II-3〉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보유



자료: 금융위원회(2008).

23)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제2호.

-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²⁴⁾ 중간지주회사는 최근 금산분리 논의과정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

○ 개정안은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 또는 지배하는 금융회사 자산규모의 합이 20조 원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두도록 하였음.

-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2012년 12월 현재 12개 금융지주회사가 영업활동 중임(〈표 II-1〉 참조).

〈표 II-1〉 국내 금융지주회사 현황(2012년 12월 현재)

지주회사명	자본총액 (십억 원)	자/손/증손회사 수(상장회사)					
		자회사(상장)		손자회사(상장)		증손회사(상장)	
신한금융지주	28,780	13	1	18	0	0	0
KB금융지주	24,704	10	0	10	0	0	0
우리금융지주	23,003	12	2	64	0	0	0
하나금융지주	20,374	10	1	23	1	4	0
산은금융지주	24,807	5	1	36	0	0	0
한국씨티금융지주	6,106	3	0	1	0	0	0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5,771	5	0	0	0	0	0
BS금융지주	3,225	6	0	0	0	0	0
DGB금융지주	2,523	5	0	0	0	0	0
메리츠금융지주	1,700	7	2	3	1	0	0
한국투자금융지주	2,550	7	0	14	0	2	0
농협금융지주	17,259	7	1	5	0	0	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013); 산은지주경영공시(2013).

24) 18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되었으나 최근 금산분리 논의 과정에서 다시 주목 받고 있음.

- 메리츠화재가 주축이 된 메리츠금융지주회사가 2011년 3월 최초의 보험지주회사로서 인가를 받음.²⁵⁾
- 이 밖에 8개의 은행지주회사, 2개의 지방은행지주회사, 그리고 1개의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영업 중에 있음.

2) 모·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

■ 금융지주회사 형태 외에도 금융그룹은 모·자회사 관계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험 및 기타 금융회사의 소유는 넓은 의미에서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모·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의 예로는 <그림 II-4>의 교보생명보험을 정점으로 한 보험그룹, 한화생명보험²⁶⁾ 중심의 보험그룹, 그리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중심의 그룹을 들 수 있음.
- 이들 모·자회사 형태의 보험그룹은 주로 산업자본이 대주주를 형성하며, 예를 들면 한화생명은 한화건설과 한화가 대주주로서 한화생명의 지분을 각각 24.88%와 21.67% 씩 소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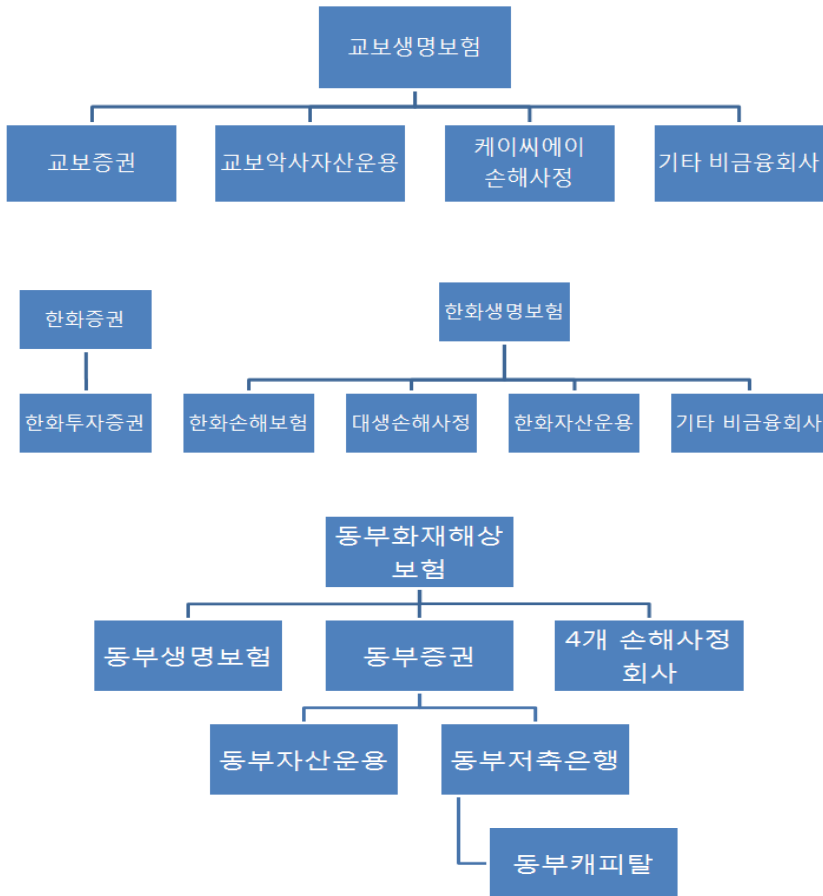
■ 모·자회사 관계로 나타나는 금융그룹의 경우 주로 공정거래법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와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금융업법을 통한 건전성 규제를 받으나 금융그룹으로서의 감독은 받고 있지 않음.

- 이들 모·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순환출자 등으로 얽힌 소유지배구조의 일부로 전체 기업집단의 그룹구조는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 등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 규제는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라기보다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산업규제의 성격이 강함.

25) 금융위원회(2011).

26) 2012년 6월 회사 명칭을 대한생명보험에서 한화생명보험으로 바꿈.

〈그림 II-4〉 모·자회사 형태의 보험그룹



2. 그룹감독의 필요성

- 금융그룹 구조도 다른 조직체계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함께 가지며, 금융그룹은 그 운영여하에 따라 장점이 부각되어 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금융시장에서 결국 퇴출될 수도 있음.
- 금융그룹의 장점은 큰 조직의 이점인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진입과 퇴출을 비교적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조직 내의 분업을 통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단순화된 소유 지배구조를 통해 투명성이 향상되어 모니터링이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음.

■ 금융그룹 구조가 갖는 단점으로는 금융그룹 내부에서 리스크의 집중과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금융그룹 내 회사들의 이해당사자 간 이해상충문제가 있음.

○ 여러 단계의 자회사 지분소유과정에서의 경제력 집중도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룹구조가 갖는 단점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금융그룹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그룹단위에서의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음.

○ 즉, 그룹단위 감독자와 각 자회사 감독자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금융그룹 리스크의 사전적인 모니터링은 금융그룹의 단점 극복을 위해 중요함.

가. 금융그룹 구조의 장점

1)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용이한 진입과 퇴출

■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회사는 정보기술과 고객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외형성장 및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비해 유리함.

○ 금융지주회사는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사무 공간, 영업점 및 전산자료 저장 설비와 정보통신망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내에서 금융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와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단, 고객정보관리인을 선임하여 동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함.²⁷⁾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관련 자회사의 임직원도 다른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음.²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²⁹⁾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
- 금융의 각 권역을 포괄하는 신상품의 개발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함.

■ 지주회사는 특정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기가 용이하여 시장 상황에 맞추어 순발력 있는 대응이 가능함.

-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의 주식 인수를 통해 기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부문에 진출하기가 용이함.
- 사업성고가 안 좋은 경우에는 주식매각 또는 청산을 통해 자회사를 정리함.

2) 경영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향상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경영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주회사는 일상적 영업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후선업무의 효율성도 제고가 가능함.³⁰⁾

27)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및 시행령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취급방침).

28)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29)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30)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함(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 한편 자회사는 고유사업모형에 전념하여 지주회사 차원의 경영효율성 개선이 가능함.

■ 기존의 계열사 간 출자 관계와 같은 소유지배구조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단순해지고 이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의 개선이 용이해짐.

○ 이로 인해 감독당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금융그룹 및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용이해짐.

나. 금융그룹 구조의 단점

1) 경제력 집중 우려

■ 지주회사는 소규모의 자기자본으로 여러 단계의 자회사 지분소유를 거치는 방식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확장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을 경우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타인자본에 의한 자본조달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자회사 지분투자 비율을 명시하기도 함.

■ 금융그룹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특히 산업자본의 보험·금융회사 소유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하여 비금융지주회사의 행위를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음.

○ 국내 금융지주회사법 역시 보험지주회사 등이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³¹⁾

○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 비금융자회사가 상장 또는 공동출자법인일 경우는 20%, 비상장법인일 경우는 40% 이상의 주식

31) 금융지주회사법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을 보유하도록 함.³²⁾

– 비은행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가 비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 일반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상장 또는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30%,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³³⁾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

2) 리스크의 집중 및 전이

■ 금융그룹 내 개별 금융회사가 안고 있는 집중리스크³⁴⁾는 크지 않더라도 금융그룹 전체의 집중리스크는 커져 그룹 전체의 부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개별회사 차원의 리스크 집중과 함께 금융그룹단위에서의 리스크 집중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금융그룹에서는 한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로 전이되어 그룹 전체가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

○ 자회사 간의 신용공여, 주식보유, 금융상품 거래, 보증 등의 관계를 통하여 한 자회사의 재무적 부실이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로 전이됨.

○ 또한 한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그룹 전체의 평판을 저하시켜 실제 재무적 부실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금융그룹의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음.

32)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공정거래법 역시 제8조의2 제2항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본 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을 상장 자회사 20%, 비상장 자회사 40% 이상 보유하도록 함.

33)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 및 3(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34) 신용공여, 금융상품의 거래, 보증 등이 거래상대방 한 곳에 집중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뜻함.

〈그림 II-5〉 금융그룹이 노출되는 위험



■ 보다 거시적으로는 금융그룹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고 실물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그룹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이며, 현재 보험그룹의 시스템리스크 감독도 논의 중에 있음.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보험 권역의 시스템리스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의 지정 및 감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보험그룹의 비전통비보험(NTNI: Non Traditional Non Insurance) 영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높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음.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문제가 된 AIG 그룹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투자부문의 자회사였던 AIGFP³⁵⁾의 부실이 그룹 전체의 부실로 전이되어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를 초래하였음.³⁶⁾

－ 다만, 보험그룹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지 또는 단순히 증폭시키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가 없음.

35) AIG Financial Product.

36)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2012).

- 또한 은행과 다른 사업모형으로 인하여 보험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요인의 가중치는 은행과는 다름(IAIS 2012. 5).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그룹(G-SIIs)의 선정에는 규모, 상호연관성, 대체가능성, 국제성, 비전통비보험(NTNI) 영업활동 등이 고려됨.

3) 이해 상충

- 금융그룹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지 못하는 불완전 자회사의 경우, 그룹 전체의 이해와 불완전 자회사의 소수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조직구조 측면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의 상충으로 의사결정 및 경영지원에 있어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지주회사 경영진과 자회사 경영진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에서 비효율이 초래되어 지주회사 조직형태를 통해 기대되었던 경영효율성 향상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음.
 - 특히,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Ⅲ. 해외의 보험그룹 감독체계

1. 그룹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가. 공동포럼(Joint Forum)의 금융그룹감독원칙

- 공동포럼은 1999년 자본의 과다계상과 리스크집중 방지, 감독자 간 협력을 금융그룹의 감독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음.³⁷⁾
 - 자본의 과다계상(excessive gearing)을 포착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평가
 - 리스크 집중과 내부거래 통제와 재무건전성 관리
 - 금융그룹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적격성 심사
 - 감독자 간 정보 교환과 협력 촉진
-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권역 간 규제의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제고에 따라 공동포럼은 여러 금융권역 및 국가에서 영업 중인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향상 방안을 2010년 보고서³⁸⁾에 담음.
 - 금융그룹의 경제적 영향력,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사업모형,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그룹 내 비규제회사의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금융그룹 감독은 기존의 전통적 감독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금융권역 간 사업모형의 근본적 차이점 및 이에 기인한 감독의 차이³⁹⁾가

37) Joint Forum(1999).

38) Joint Forum(2010).

존재하지만, 각 금융권역의 동일 기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있어서 일관성과 투명성의 향상이 필요함.

- 금융그룹 차원의 행위와 위험을 포착할 수 있는 그룹단위의 금융감독을 시행함.
- 금융권역 간 규제의 차이를 해소하여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의 가능성을 최소화함.

■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공동포럼은 2011년에 1999년의 원칙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금융그룹감독원칙⁴⁰⁾을 권고함.

- 여기서 금융그룹이란 은행, 증권, 보험 중 최소 2개 부문에 걸쳐 주된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공통의 지배 아래 있는 금융기업들의 그룹으로 정의함.
- 그룹감독은 개별 금융기업의 감독과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함.
- 새 원칙은 금융권역 간 활동으로 인한 규제의 차이와 복잡성에 따른 규제 차익의 가능성 및 이의 완화방안을 제시함.
 - 금융산업의 변화와 특수목적회사 및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에 초점을 맞춰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내부거래에 관한 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임원 등의 적격성 원칙 적용범위를 보다 넓혀서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포괄해야 한다고 권고함.

■ 금융그룹감독원칙은 금융그룹감독을 크게 감독자의 권한, 감독자의 책임,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리스크관리의 5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제시함(〈표 Ⅲ-1〉 참조).

- (감독자의 권한) 효과적인 그룹감독을 위해서 감독자에게 그룹감독에 필요한 권한과 수단을 부여하는 명확한 법적 틀이 필요함.

39) 예를 들어, 은행이나 금융투자에는 없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고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준비금의 평가 및 이에 대한 감독은 보험에서는 핵심적 개념임.

40) Joint Forum(2011).

〈표 Ⅲ-1〉 공동포럼의 금융그룹감독원칙

구분	금융그룹 감독 원칙
감독자의 권한	1. 포괄적 그룹감독; 2. 협력과 정보교환; 3. 독립성과 책임 명시; 4. 감독자원
감독자의 책임	5. 그룹감독자; 6. 감독자 간 협력; 7. 건전성 기준과 범위; 8. 감시 및 감독; 9. 감독수단과 강제
기업지배구조	10.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11. 금융그룹의 구조; 12. 임원 등의 적격성; 13. 지주회사 이사회 책임; 14. 보수
자본적정성	15. 자본적정성 요구; 16. 그룹의 자본적정성평가; 17. 자본의 이중계상 고려; 18. 과도한 레버리지 고려; 19. 내부 거래 고려
유동성	20. 지주회사 유동성 고려
리스크관리	21. 독립성, 포괄성, 효과성; 22. 리스크관리문화; 23. 리스크허용한도; 24. 신사업의 위험평가; 25. 아웃소싱; 26. 리스크상황분석; 27. 리스크통합; 28. 리스크집중 및 내부거래; 29. 부외거래

자료: Joint Forum(2011).

- 또한 그룹감독에는 비규제기업의 리스크와 관련된 정보접근과 필요 시 시정조치권을 포함해야 함.
- (감독자의 책임) 감독자 간 조정, 협력 및 정보교환과 이를 촉진하고 조정할 그룹감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지배구조) 금융그룹의 경영 및 지배와 관련된 임원 등의 적격성과 지배구조의 범위를 그룹단위로 확대함.
-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그룹 전반의 리스크에 주목하여 비규제기업의 활동을 포함한 그룹단위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함.
 - 적절한 내부통제의 제약 아래 건전한 의사결정, 위기상황분석을 반영하는 자본평가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 평시와 위기상황에서 모든 단계의 자금조달을 반영하는 금융그룹의 유동성 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감독지침을 제시함.
- (리스크관리) 그룹단위 리스크집중과 내부거래의 관리 및 보고를 위한 효과적 시스템과 절차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비규제 관련회사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 리스크에 대한 금융그룹의 측정, 관리 및 보고능력을 강조함.

■ 한편, 금융그룹 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회사들에 주목하고, 관련 감독자들 사이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함.

- 금융그룹 내의 비규제회사 또는 금융그룹이 속한 상위 비규제지주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과 검사권에 주목함.
 - 비규제회사에는 사업 또는 순수지주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 특수목적회사가 있을 수 있음.
 - 비규제회사의 특성이나 금융그룹에 미칠 영향을 그룹단위에서 평가함.
- 여러 금융권역의 감독자들 간 조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진 그룹감독자의 명시, 분명하고 투명한 감독절차, 권역별 감독의 차이를 해소해 줄 효과적인 장치를 전제로 원칙을 적용함.

나. IAIS의 보험그룹 감독방식

■ IAIS는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을 크게 보험핵심원칙(ICPs) 중 그룹단위감독에 관한 원칙,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SIIs)의 선정 및 감독의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접근함.

- 2011년 개정된 보험핵심원칙을 통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보험그룹감독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음.
 - ICP23 그룹단위감독(Group-wide Supervision)
 - ICP25 감독 협력 및 협조(Superviso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 201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IAIGs)에 대한 국제적이고 공통되는 감독기준 성격의 공통감독체계(ComFrame) 마련을 위해 작업 중임.
-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SIIs)에 대한 선정기준 및 규제방안을 마련함.⁴¹⁾

- IAIS는 2012년 5월에 선정기준, 10월에 규제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마침.

〈그림 Ⅲ-1〉 보험그룹 형태에 따른 IAIS의 감독방식

그룹형태	보험그룹	IAIGs	G-SIIs (=IAIGs)	G-SIIs≠IAIGs (미혼상 가능)
제1단계	그룹단위감독 보험핵심원칙			
제2단계		ComFrame		
제3단계			G-SIIs 규제	

자료: IAIS(2012, 7).

1) 그룹단위감독 관련 보험핵심원칙(ICPs)

가) 보험핵심원칙 제23장 그룹단위감독

■ IAIS는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유지를 그룹감독의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감독에 있어 회사단위와 그룹단위감독을 함께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ICP 23).

○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 및 금융권역 자회사를 포함한 관련 회사 감독자들과 협력하여 그룹단위감독의 대상이 되는 보험그룹의 범위를 확정함(ICP 23.1).

- 보험회사와 그룹 내 회사들은 그룹단위감독을 받게 될 그룹 범위의 확정
- 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감독자에 제공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들 정

41) 금융위기 이후 보험그룹의 시스템리스크 관련 논의는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나, 관심있는 독자는 임준환·유진아·이경아(2012)를 참조하기 바람.

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

- 그룹 감독자들은 규제감독의 사각 및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단위감독의 범위에 관하여 사전별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동의해야 함.
- 그룹단위감독의 목적상 보험그룹으로 확정되는 그룹은 모든 관련회사를 포함해야 하며, 회사의 연관성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ICP 23.2).
 - 영업 및 비영업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 포함)
 - 보험회사(자매 보험회사 또는 자보험회사)
 - 은행 및 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권역의 회사
 - 비규제회사(모회사, 자회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
- 또한 보험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그룹의 범위를 확정함.
 - 상호 연관성(Interconnectedness)
 - 리스크 노출 정도(Risk Exposure)
 - 리스크 집중도(Risk Concentration)
 - 리스크 전이(Risk Transfer)
 - 그룹 내 거래 및 노출 정도(Intra-group Transactions and Exposure)
- 감독자의 법적권한 또는 감독권 부족으로 확정된 보험그룹 범위를 축소하지 않으며, 그룹감독 목적상의 범위는 그룹구조, 영업활동 또는 거시경제 환경 등 그룹 내·외의 변화에 맞추어 신축성을 가짐(ICP 23.3, 23.4).
 - 감독자는 보험그룹 범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함.
 - 또한 감독자는 그룹감독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투명한 보험그룹 구조를 갖도록 요구해야 함(ICP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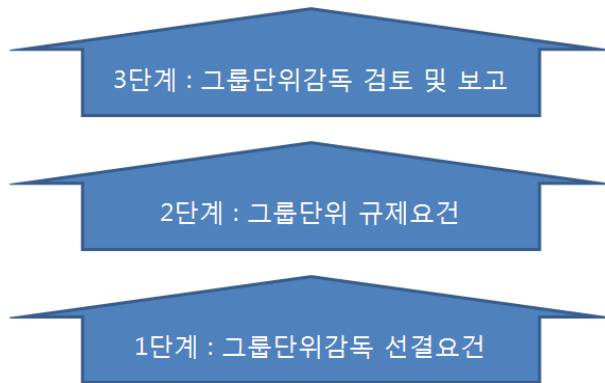
■ 보험핵심원칙은 특히 그룹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효율

적인 그룹단위 감독체계(GSF: Group-wide Supervis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ICP 23.6).

-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수립은 그룹단위감독의 범위, 효과적 감독을 위한 선결조건, 보험그룹의 특성, 규모, 복잡성에 따른 감독체계의 적용, 이행 과정에서의 피드백 및 그룹단위감독의 궁극적 목표를 고려해야 함.
 - －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범위는 국가 및 권역 간 규제차익과 감독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모든 관련회사와 리스크를 고려하여 설정함.
 - － 그룹감독의 선결조건으로 감독자의 감독권, 법적권한 등이 갖추어지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
 - － 감독체계의 설계와 이행 간에는 시장 및 그룹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여 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반복적 순환구조를 이루도록 함.
 - － 그룹감독의 궁극적 목표는 보험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구축은 규제의 불필요한 중복, 사각 또는 부담을 줄이면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안정성을 유지함.
- 또한 그룹단위 감독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이고 기능적 접근법을 취하며 그룹단위감독의 관점에서 보험감독을 이해하는 수단임.
 - － 선결요건, 그룹단위규제요건, 그리고 그룹단위감독 검토 및 보고의 3단계로 구성됨.
 - － 그룹단위 감독체계는 IAIS의 보험감독체계에 기반하여 감독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음.

■ 그룹단위규제요건(Group-wide regulator requirements)은 개별회사감독에 대한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개별회사감독요건을 확대하거나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추가적 사항을 포함(ICP 23.7).

〈그림 Ⅲ-2〉 IAIS 그룹감독체계(GSF)



자료: IAIS, ICP 23 그룹단위감독 〈그림 23.3〉.

○ 개별회사감독요건의 확대적용

- 지급여력평가(그룹단위 지급여력)
-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그룹단위 지배구조)
- 영업행위(그룹단위 영업행위)

○ 그룹단위감독 관련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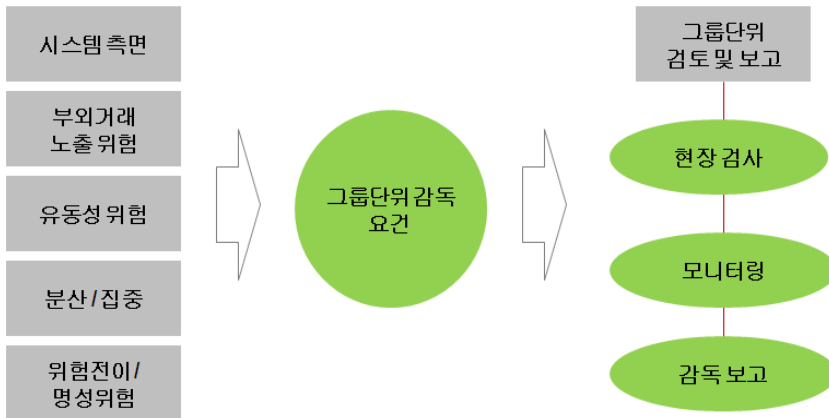
- 그룹 구조의 복잡성
- 국경 간/금융권역 간 이슈
- 개별회사감독과의 상호작용
- 비규제회사

■ 보험그룹이 그룹단위규제요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그룹단위감독의 검토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ICP 23.8) 감독자들에게 현장검사와 상시감독을 통한 그룹감독 평가권한을 부여해야 함.

- 그룹단위 감독체계는 그룹단위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다루는 그룹 규제요건을 판단하며, 적절한 대응을 위한 그룹단위감독 검토 및 보고 절차의 수립하고 이행하는 3단계 접근법으로 이루어짐(〈그림 Ⅲ-3〉참조).

- IAIS는 또한 보험사업에 따르는 리스크 이외에 시스템, 부외거래, 유동성, 분산 및 집중, 위험 전이와 평판 등의 추가적 리스크를 고려할 것을 제시함.

〈그림 Ⅲ-3〉 IAIS 그룹감독체계의 감독 검토 및 보고



자료: IAIS, ICP 23, 〈그림 23.5〉.

나) 보험핵심원칙 제25장 감독 조정과 협력

■ IAIS는 그룹단위감독에 있어서 관련된 감독자 및 감독당국 사이의 비밀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과 조정 및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ICP 25).

- 협력 및 정보공유의 대상은 중앙은행, 정부부처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역의 감독자도 포함하여 개별 회사 및 그룹에 대한 포괄적 감독을 용이하도록 해야 함(ICP 25.1).
- 그룹감독을 위한 감독자 간의 협력과 조정 및 정보공유를 위해 감독협의체(supervisory college)의 구성 또는 관련 감독자 간 양해각서(MoU)⁴²⁾의 교환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음(ICP25.1.2).
 - 그룹감독을 위한 조정은 감독협의체 외에도 다른 조정 메커니즘도 포

4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함하며, 이는 그룹의 특성, 규모 및 그룹과 리스크의 복잡성에 따라 정해짐(ICP25.1.4).

- 감독협의회 및 기타 협력 메커니즘은 그룹의 내재된 위험, 특성, 규모, 복잡성을 함께 고려하여 그룹의 법률적, 조직적 구조 및 그들의 활동을 감안하여 구성함(ICP25.1.6).

■ 감독자 간 양해각서(MoU)는 양자 간(두 권역) 또는 다자 간(세 권역 이상) 체결 형식을 가질 수 있으며 특정 그룹 및 관련 감독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환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ICP25.1.7).

- MoU는 감독자 간에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또는 비상 상황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 그룹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체결함.
- MoU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MoU 참여 감독자 및 감독기관 사이의 정보 교환내용에 대한 엄정한 보안유지가 중요함.
- MoU를 통해 그룹단위 평가의 일부를 관련 감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전부를 지정된 그룹단위 감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그룹감독에 있어서 관련 감독자 간 협력과 조정 방법 중 하나는 감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구성원은 그룹에 속한 보험회사의 감독자와 필요한 경우, 다른 권역의 감독자도 포함할 수 있음(ICP25.1.9).

- 정기적인 감독협의회 회의를 통해 관련 감독자들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다른 국가 및 금융권역의 감독자들과의 협력도 증진될 수 있음.
- 감독협회의 주된 목적은 그룹 전체에 관한 정보 공유나 감독관련 이슈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춤(ICP25.1.13).
 - 그룹감독을 위한 감독자 간의 협력과 조정 및 정보공유를 위해 감독협회의 구성 또는 관련 감독자 간 양해각서의 교환과 같은 다양한 방법

- 긴급상황 시 감독 협력과 조정의 과정, 그에 따른 계획 및 절차 협의
- 그룹의 개요 및 공식적인 운영구조 형성
- 그룹차원의 위험분석, 그룹 내 중요한 관계형성
- 그룹 전반에 걸쳐 시스템리스크로 확인된 부분들에 대한 토론
-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중복 감독은 피하고 공동감사 진행
- 그룹 및 감독협의체를 통한 정보 수집 동의
- 그룹감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감독협의체의 진행 여부 협의

2)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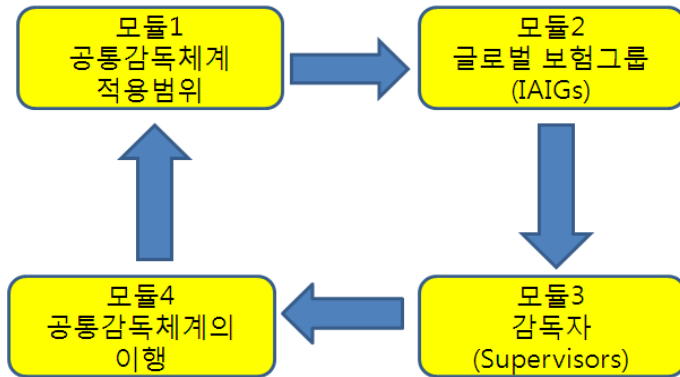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여러 금융권역과 국가에 걸쳐있는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에 있어서 감독자들 사이의 조정, 협력 및 정보공유에 대한 필요성에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

- 특히 감독자들 간 협력과 정보공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감독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IAIS는 201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개발 작업에 착수함.
- 2013년 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완성 뒤 영향평가를 거쳐 시행될 계획임.

■ 우리나라는 아직 공통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글로벌 보험그룹(IAIGs)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개방된 보험시장은 이미 많은 외국의 글로벌 보험그룹들의 활동무대이기도 함.

- 한국 보험감독당국은 이미 진출국 감독자(host superviso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공통감독체계 논의는 한국의 보험그룹감독과도 관련이 있음.
- 따라서 공통감독체계를 통한 규제요건 및 감독실무의 국제적인 수렴과 협력의 증진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우리나라 감독당국의 감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림 Ⅲ-4〉 공통감독체계(ComFrame) 개념도



■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감독기준인 공통감독체계는 총 4개 모듈(modules)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구성요소(elements)들로 구성됨.

- 모듈1은 공통감독체계가 적용되는 그룹의 식별기준 및 감독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모듈2는 글로벌 보험그룹이 준수해야 할 규제요건들로 이는 향후 국가 및 지역 감독에 반영될 것임.
- 모듈3은 감독절차(supervisory process)와 같은 감독자의 공통감독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요건들을 담고 있음.
- 모듈4는 공통감독체계 이행에 필요한 국가단위의 사전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IAIS는 공통감독체계에서 국제적 영업활동과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보험그룹을 적용 대상으로 제시하되 각국 감독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함(모듈1).

〈그림 Ⅲ-5〉 공통감독체계(ComFrame)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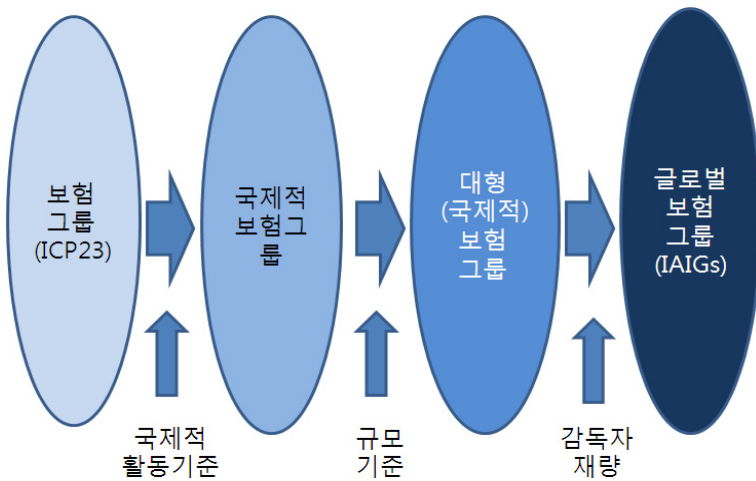


자료: IAIS(2012, 7), The 2012 ComFrame Draft.

- 보험그룹은 둘 이상의 계열회사 중 적어도 하나가 중요 보험회사이고 계열회사들이 ICP 23⁴³⁾에 정의된 보험그룹에 해당함.
- “국제적으로 영업 중”이란 일정 개수(예: 3개) 이상 주재국의 자회사 및 지점을 통한 활동을 하고 일정비율(예: 10%) 이상 보험인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 규모는 수입보험료 (예: \$10억) 또는 자산 (예: \$50억)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그룹이 글로벌 보험그룹에 해당할 수 있음.
 - 수입보험료 기준은 주로 손해보험사에, 자산 기준은 주로 생명보험사에 해당되는 기준이 될 것임.
- 공통감독체계의 적용대상 보험그룹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국가의 감독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43) ICP 23 그룹단위감독(Group-wide Supervision).

〈그림 Ⅲ-6〉 글로벌 보험그룹(IAIGs) 식별 절차



자료: IAIS(2012, 7), The 2012 ComFrame Draft M1E1 부록 1.

〈그림 Ⅲ-7〉 공통감독체계(ComFrame) 모듈2 및 모듈3

모듈2 글로벌 보험그룹		모듈3 감독자	
그룹 지배구조	M2E1 지배구조	M3E1 감독절차	그룹 감독절차
그룹 ERM	M2E2 전사적리스크관리(ERM)	M3E2 감독협력과 협조	감독 협력
그룹 구조 및 전략	M2E3 ERM 관점의 경영구조	M3E3 그룹감독자 및 관련 감독자의 역할	
	M2E4 ERM 관점의 그룹전략	M3E4 감독협력체	
	M2E5 ERM 관점의 내부거래와 노출		
그룹 재무상태	M2E6 부채/준비금 및 자산/운용	M3E5 감독자 간 위기관리	위기관리 및 청산
	M2E7 평가	M3E5 IAIG와 청산	
	M2E8 그룹 자본적정성		
그룹 보고 및 공시	M2E9 보고 및 공시		

자료: IAIS(2012, 7), The 2012 ComFrame Draft.

■ 모듈2는 그룹 지배구조, 그룹 전사적리스크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그룹 구조 및 전략, 그룹 재무상태와 그룹 보고 및 공시의 5개 부문에 걸쳐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 그룹 지배구조에서는 글로벌 보험그룹이 그룹단위 지배구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건전한 경영과 영업 전반을 관장하여 계약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룹 ERM에서는 글로벌 보험그룹이 그 특성, 규모와 복잡성에 따른 개별 회사와 그룹단위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련된 주요 리스크를 제어하도록 그룹 ERM 체계를 갖추도록 함.
- 그룹 구조 및 전략에서 그룹감독을 위해 감독자들이 ERM 관점에서 글로벌 보험그룹의 법적·경영적 조직구조를 인지하고 그룹의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한 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해해야 함을 강조함.
- 그룹 재무상태에서는 글로벌 보험그룹의 ERM 측면에서 부채(준비금) 및 자산(운용) 등에 관한 그룹의 내부 정책, 부채 및 자산의 평가방법⁴⁴⁾, 그룹단위 지급능력 평가⁴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지막으로 그룹 보고 및 공시는 그룹감독을 위한 보험그룹과 관련한 정보의 보고 내용 및 범위와 시장규율을 촉진하기 위해 이 중 일부 정보를 공시하는 문제 등을 다룸.

■ 모듈3는 그룹단위 감독절차, 감독협력과 위기관리 및 청산의 3개 부문에 걸쳐 5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 그룹단위 감독절차는 관련 감독자의 그룹 관련 정보수집, 리스크 평가, 감독기획과 상시감시(off-site monitoring) 및 임점검사(on-site inspection) 등

44)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이용한 보험부채의 평가방법은 회계 관련 국제기구에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45) 공통감독체계 개발과 관련한 여러 논의 및 쟁점 중에서도 특히 자본적정성 부분은 국가 및 대륙 간 의견수렴이 쉽지 않은 부분이며 여전히 IAIS 내에서 토의가 진행 중에 있음.

일련의 감독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룹감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모듈 2의 그룹 지배구조, ERM, 조직 및 전략, 그리고 재무상태 관련 내용임.

○ 감독협력은 그룹단위 감독자와 관련 감독자들의 역할과 이들 사이의 협력, 조정, 정보공유의 범위와 비밀보호, 감독협력체의 구성과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위기관리 및 청산은 그룹단위 감독자가 감독협의체와 함께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상계획 및 대책과 글로벌 보험그룹 청산 시의 관련 감독자 간 국제적 협력을 다루고 있음.

■ 모듈4는 공통감독체계의 이행을 위한 IAIS 회원국들의 준비사항인 전제조건(Prerequisite)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전제조건은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 부여, 전문성, 조직절차 및 감독자원을 포함함.

2. EU의 보험그룹감독

가. EU의 금융그룹 감독지침

■ EU 금융복합그룹 지침에는⁴⁶⁾ 보험회사가 금융 및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없음.

○ 금융지주회사의 타 회사 주식 소유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규제들은 존재하지 않음.

46) EU Financial Conglomerates Directive(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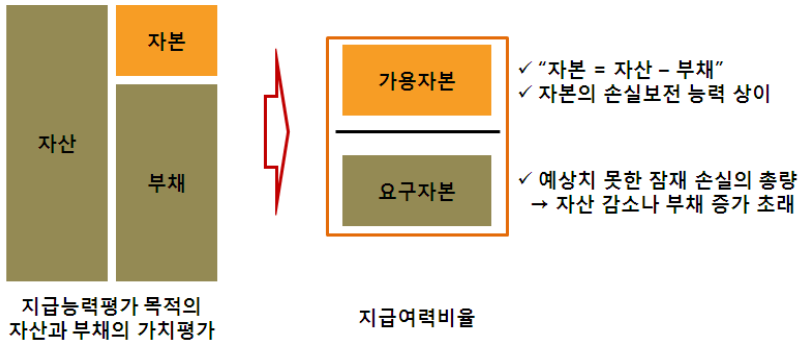
- EU는 보험지주회사의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적 규제를 위하여 ‘보험지주회사의 감독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
 - 기존의 금융업권별 규제 이외에 보험그룹에 대해 추가로 규제함.
 - 특히 그룹감독의 초점은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급여력과 위험관리, 그룹 내 거래로 인한 내부 위험관리임.
 - － 그룹 내 거래는 대출, 보증, 부외거래, 투자, 재보험활동, 비용의 공동 부담 등의 행위를 포함함.
 - － 요구자본의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룹 효과를 제거한 후의 필요자본 유지를 의미함.
 - 보험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각 회원국 간의 정보의 교환과 감독공조 등에 대한 규정을 강조함.

나. EU Solvency II의 그룹감독

- EU Solvency II는 보험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보험그룹 전체를 하나의 경제 주체로 취급함.
 -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자회사 여부를 판정함.
 - 연결재무제표에는 보험업 관련 서비스 제공 자회사도 포함함.
 - － 보험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란 자산의 소유 또는 관리,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관리, 보험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에 부수하는 다른 비슷한 활동을 하는 회사를 의미함.
 -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은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산출함.
- EU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자기자본규제를 통해서 접근하며 특별히 자산운용규제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1) 가용자본과 자본의 질 평가

〈그림 Ⅲ-8〉 보험회사의 지급능력평가



■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은 예상치 못한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손실의 총량(요구자본)에 상당하는 규모의 자본(가용자본)을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평가함.

-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를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하여 계산된 지급여력이 가용자본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 요구자본” 또는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이면 보험회사가 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국내에서는 위험기준자본(RBC: Risk-Based Capital)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요구자본에 해당됨.

■ 그러나 금융위기를 통하여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도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없는 자본이 있음을 보여줌.

- 자본 계층화 논의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을 구분하여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자본을 늘리려는 데에서 출발함.
- IAIS는 보험핵심원칙(ICPs)을 통해 자본이 보험사업을 지속하는 동안의

(going-concern basis)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고, 청산 시(winding-up) 계약자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함(ICP 17.2.6).

- 보험사업 지속에는 신규판매 없이 보유계약만 관리하는(run-off basis) 경우도 포함함.

○ IAIS는 각국 보험감독자에게 자본의 손실보전능력에 관한 기준 정립을 요구(ICP 17.11)

- 자본의 손실보전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자본의 후순위성, 가용성, 영구성, 사용처 제한이나 의무배당 여부 등을 평가척도로서 제시함(ICP 17.11.7).
- 가용성(대체성)과 양도성을 갖지 못한 자산은 그룹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가용자본에서 제외함.
- 대체성은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한정되지 않는 특성을, 양도성은 한 구성원에서 다른 구성원으로의 자산이동에 심각한 장애가 없어서 최대 9개월 이내에 그룹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함.

○ EU Solvency II는 IAIS가 제시한 자본구성의 구체적인 규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EU Solvency II는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항목은 물론 신용장 등의 부외 항목도 가용자본 범주에 포함하여 자본의 손실보전능력을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함.

○ EU Solvency II는 자본의 후순위성, 가용성, 충분한 듀레이션(영구성), 상환요건 유무, 고정이자지급 유무, 사용처 제한 유무의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자본의 질을 결정함.

○ 자본의 질(quality)은 상(high), 중(medium), 하(low)로 분류함.

- 청산 시에만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low quality)의 자본으로 분류함.
- 사업의 유지에 기여하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medium

quality)의 자본으로 분류함.

-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 언제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high quality)의 자본으로 분류함.

- 부외항목의 경우 자본의 질이 우수하더라도 보완자본으로만 인정되며, 특별계정 등 특정 위험에 할당된 자본(ring-fenced funds)도 보완자본으로 분류함.

〈표 Ⅲ-2〉 EU Solvency II와 Basel III의 가용자본 구성

자본의 질	EU Solvency II		Basel III
	재무상태표(Basic)	부외항목(Ancillary)	
상(high)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보통주자본(CET),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중(medium)	보완자본(Tier 2)	보완자본(Tier 3)	
하(low)	보완자본(Tier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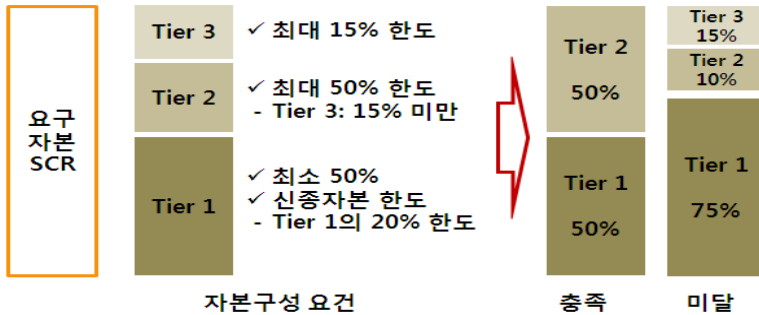
- Basel III 역시 자본의 질을 결정할 때 유사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Basel III는 부외항목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자본 중에서도 보통주를 따로 구분하여(CET: Common Equity Tier) 보통주자본의 구성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Solvency II와 차이가 있음.

■ EU Solvency II의 자본계충화는 보험회사가 요구자본을 초과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의 질이 낮으면 감독당국은 지급능력이 낮다고 평가함.

- 보험회사는 “기본자본 > 보완자본(Tier 2) > 보완자본(Tier 3)”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대비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Tier 2, 3)의 구성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본자본 구성비는 요구자본(SCR)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 또한 보완자본 중에서 Tier 3의 구성비는 요구자본(SCR) 대비 15% 이하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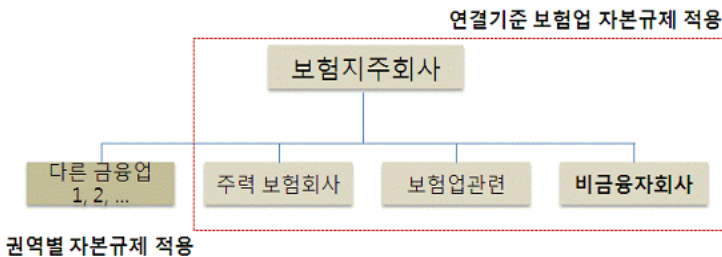
〈그림 III-9〉 EU Solvency II의 요구자본에 대응하는 가용자본 구성



2) 요구자본

- 보험그룹의 요구자본 산출은 보험회사군, 다른 금융자회사, 지분율이 낮은 보험회사의 세 개의 군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합산함.
 - 지주회사와 지분율로 통제가 가능한 보험회사군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간주하여 요구자본을 산출(SCR*),
 - 다른 금융자회사(CROFS)와 지분율은 낮지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회사의 요구자본(SCRNCP)을 별도로 산출함.

〈그림 III-10〉 EU Solvency II의 보험그룹 요구자본 산출



- EU Solvency II는 시장(SCR_{mkt}), 신용(SCR_{def}), 생명보험(SCR_{life}), 건강보험(SCR_{health}), 손해보험(SCR_{nl}) 등 각 리스크별로 구분하여 기초요구자본($BSCR$)을 산출함.

- 각 요소끼리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합산함으로써 그룹 내 분산효과를 반영함.
-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진 경우, 각 회사의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한 값보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하나로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값이 작음.

$$BSCR = \sqrt{\sum_{ij} Corr_{ij} \times SCR_i \times SCR_j}$$

- 비보험자회사는 지분법을 통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며 이는 관련된 자본요구량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지분투자위험과 집중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량 산출이 필요함.

3) EU Solvency II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

- 유럽보험감독국(EIOPA)는 보험그룹 167개를 포함한 총2,520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III-3〉 EU Solvency II 제5차 계량영향평가: 보험그룹의 규모별 분포

평가방식 및 규모	대형그룹	중형그룹	소형그룹	계
EU S I* (현행 표준)	17	22	112	151
EU S II** (표준모형)	17	23	126	166
EU S II (내부모형)	9	6	14	29
평가대상 그룹 수(비율)	17(10.2%)	23(13.8%)	127(76.0%)	167(100.0%)

주: S I*: Solvency I, S II*: Solvency II

- 보험그룹의 규모는 EU Solvency II가 적용되는 전체 보험회사의 68.5%에 해당하며, 보험료나 준비금 규모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함.
 - － 생명, 손해, 재보험, 캡티브, 생·손보 겸영 회사들로 구성되며, 소형사 60.0%, 중형사 31.4%, 대형사가 8.9%를 차지함.⁴⁷⁾
- 167개 보험그룹은 소형 76.0%, 중형 13.8%, 대형 10.2%로 구성됨.⁴⁸⁾
 - －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의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EU Solvency II의 결과를 기준 방식인 EU Solvency I의 결과와 비교함.⁴⁹⁾

가) 지급여력비율 하락: 요구자본의 증가

■ 제5차 계량영향평가에서 요구자본 증가로 잉여자본⁵⁰⁾이 축소되고 지급여력 비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위험을 반영한 요구자본 산출과 가용자본 요건의 강화로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고 잉여자본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남.
 - － EU Solvency I은 책임준비금, 위험보험료, 보유보험료 등에 일정률의 위험계수를 곱하여 요구자본량을 산출한 반면, EU Solvency II는 시장, 신용, 운영,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등의 다양한 위험을 반영함.
 - － EU Solvency I은 가용자본의 손실흡수성 등 리스크 정도를 구분하지 않으나, EU Solvency II는 위험에 따른 재무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만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함.
- 한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과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도 보험그룹의 잉여자

47) 손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10억/1억 유로(약 1.5조 원/0.15조 원)를 기준으로 대/중/소형사를 구분하고, 생명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100억 및 10억 유로(약 15조 원 및 1.5조 원)를 기준으로 대/중/소형사로 구분함.

48) 보험그룹의 경우 자산 900억/300억 유로(약 140조 원/47조 원)를 기준으로 대/중/소형사로 구분함.

49) EU Solvency II 표준모형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기준 이외의 방식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함.

50) 잉여자본 = 가용자본 - 요구자본

본 축소를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남.

－ 연결재무제표 적용으로 그룹의 가용자본이 크게 감소함.

■ 보험그룹의 잉여자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EU Solvency II의 표준모형을 적용한 경우 EU Solvency I에 비해 감소한 반면, 내부모형에서는 그룹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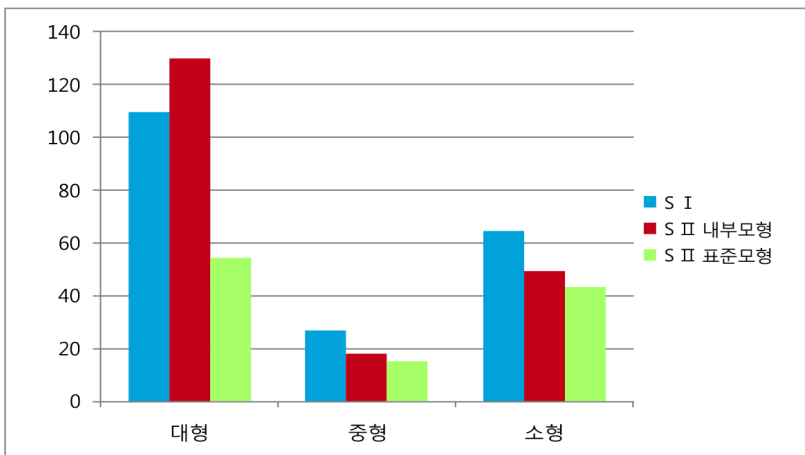
○ 보험그룹의 잉여자본은 EU Solvency I의 2,000억 유로에서 EU Solvency II에서 1,140억 유로 수준으로 하락하여 860억 유로가 감소함.

○ 한편, 내부모형에서는 잉여자본이 EU Solvency I에 비해 증가한 경우도 발생함.

－ 내부모형 적용에 따른 요구자본의 감소 때문으로 추정됨.

〈그림 III-11〉 보험그룹의 잉여자본 변동

(단위: 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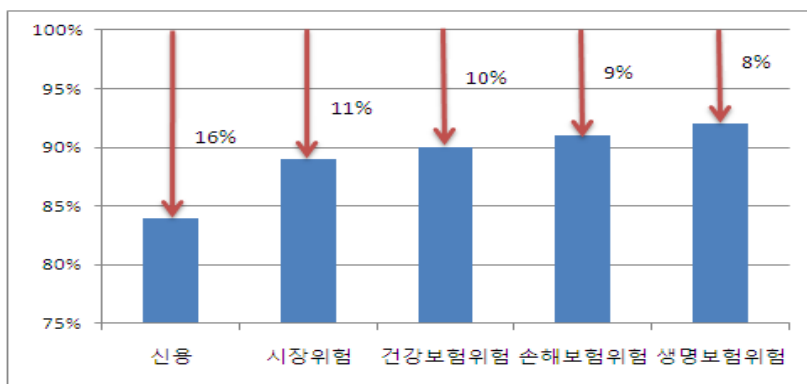
－ 중소형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잉여자본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나) 분산효과: 그룹의 요구자본 감소

■ 보험그룹의 요구자본은 단순 합산한 요구자본 대비 80% 수준이나, 내부거래를 제거할 경우 단순 합산한 요구자본 대비 87% 수준을 보임.

- EU Solvency II 에서 보험그룹의 요구자본은 개별 자회사에 대해 산출된 요구자본을 합산할 때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러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나타난 분산효과 때문이다.
- 보험그룹에 대한 EU Solvency II 표준모형의 그룹 요구자본과 개별 자회사의 요구자본(SCR_i)의 합산치 비교($1 - SCR_{group} / \sum SCR_i$)는 평균 20%의 그룹 분산효과로 나타남.⁵¹⁾
 - 그룹 규모가 클수록 요구자본이 감소하는 폭도 더 큰 것으로 관찰됨.⁵²⁾
- 한편,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제 분산효과는 13% 수준으로 나타남.
 - 개별 자회사의 요구자본 합산치와 내부거래 부분을 조정한 요구자본(SCR_i^{adj})을 합산한 값의 비교($1 - \sum SCR_i^{adj} / \sum SCR_i$)는 9% 수준이고, 내부거래 제거 분산효과($1 - SCR_{group} / \sum SCR_i^{adj}$)는 13% 수준임.

〈그림 III-12〉 보험그룹의 위험별 분산효과



51) 표준편차가 18%에 달하여 개별 기업별 실제 분산효과 정도는 크게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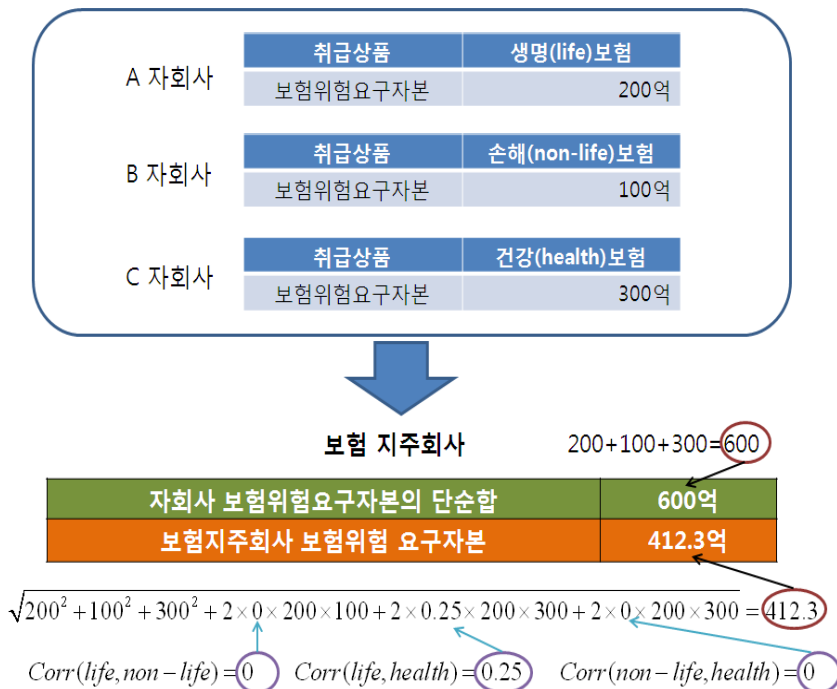
52) 대형그룹 21%, 중형그룹 16% 수준이었으나 소형그룹은 5% 미만임.

■ EU 보험그룹의 분산효과는 신용위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분산효과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보험위험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시장위험의 분산효과는 금리위험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분산효과 예시는 그룹 내 자회사들의 요구자본 단순 합이 600인 반면, 분산효과를 고려한 지주회사 전체의 보험위험 요구자본은 412.3으로 경감됨을 보여줌(〈그림 Ⅲ-13〉 참조).

■ 보험그룹에 대한 5차 계량영향평가를 요약하면, 보험그룹의 지급여력비율은 EU Solvency I 대비 하락했으나, 그룹 전체 요구자본은 개별 자회사 요구자본의 단순 합산치보다 감소함.

〈그림 Ⅲ-13〉 분산효과 예시



-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적용으로 그룹의 가용자본이 하락하고 요구자본은 EU Solvency I 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임.
- 그러나 보험자회사의 요구자본이 하나의 경제단위로 산출됨으로써 요구자본의 경감효과가 나타남.
- 또한 내부모형을 적용할 경우 보험그룹의 요구자본 수준이 표준모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아 요구자본 경감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험그룹의 규모가 클수록 요구자본 경감효과도 커지는 현상은 EU Solvency II 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모두에서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음.

3. 미국의 보험그룹 감독

가.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주별 감독

- 1999년 미국은 은행업의 다른 금융업 겸영을 허용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을 마련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함.
 - 이때,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은행을 포함해야 함.
 - 은행을 포함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인 경우는 보험지주회사라고 하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보험의 경우 연방이 아닌 각 주별로 감독하며,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에서 모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각 주에서 채택하는 형태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통적인 보험감독체계를 유지함.
 - NAIC는 1969년 보험지주회사 모델법(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ion Act)을 제정한 이래 이를 각주에 권고하여 그룹감독의 틀을 형성함.
 - 자본요건에 대해서는 모·자회사 그룹이 아닌 지주회사의 경우 그룹

자본요건이 없고 개별 자본요건 산출 시 그룹 영향을 고려하여 요구자본 수준을 조정하는 정도에 그침.

－ 따라서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음.

-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은 공통적으로 지주회사가 보험회사의 자산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전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보험지주회사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주회사의 범위를 제시함.

- 보험지주회사법은 보험회사 자체는 물론이고 보험회사와 관계회사와의 거래를 모두 규제함.
- － 경영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중요거래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거나 사전승인을 요구함.

나.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작업(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혁 작업(이하 SMI)을 추진함(NAIC 2008).

- NAIC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체계를 재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보험감독 및 은행감독, 회계 부문의 국제적 논의를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에 반영하기 위한 SMI 로드맵을 마련함.
- 시스템위험에 대해서는 Dodd-Frank Act(2010)를 통해 재무부에 연방보험국(Federal Insurance Office)을 설치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함으로써 주 단위 보험감독체계를 보완함(조용운 2010).

■ 미국의 개혁 작업은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함.

- NAIC는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그룹감독,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및 재무보고, 재보험 등의 의제를 설정함.

■ 미국의 개혁 작업은 EU Solvency II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다는 점이 특징임.

○ NAIC는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그룹감독,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및 재무보고, 재보험 등의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작업반을 운영함.

■ NAIC는 2013년 말까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의 틀과 핵심원칙을 정비하고 기존 그룹감독 체계 재편을 완료할 예정임.

○ NAIC는 IAIS의 보험핵심원칙을 반영하여 7개 조항으로 구성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원칙을 제시함.

〈표 III-4〉 미국의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의 의제

주요 의제	세부 의제
자기자본규제	자본적정성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기업지배구조 그룹지급능력
그룹감독	그룹지급능력
감독회계 및 재무회계	국제적인 지급능력평가 및 회계기준 원칙중심 준비금 적립
재보험	재보험

자료: NAIC(2012).

○ EU Solvency II 사례를 통해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감독 보고(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자본계층화, 내부모형,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그룹감독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반영함.

다. SMI 성과와 그룹감독

- NAIC는 지급능력평가와 상시감독의 개선방향을 규제보다는 감독에 초점을 두고 접근함.
 - RBC 표준모형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지속하되, 우선 리스크분산 방법론과 보험회계 및 재보험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주력함.
 - RBC는 부실보험회사에 대한 적기감독조치에 필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RBC 내부모형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수용함.

- NAIC는 상시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가 감독목적의 전사적 위험관리(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의무적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 중임.
 - NAIC는 2011년 ORSA 매뉴얼을 제시하고, 보험회사가 ORSA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델법을 2012년 채택하고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함.

- NAIC는 2010년 보험지주회사 모델법규를 개정하고 투명성 확보와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Windows and Walls” 개념을 도입하여 감독협의체 구성과 모니터링 수단 강화에 주력함.

〈표 Ⅲ-5〉 재무건전성 감독의 개혁 방향

주요 의제	개혁 방향
자본규제	• 시나리오 및 추세 분석 • 대재해 등 리스크 추가 반영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 기업지배구조 요강 채택 • ORSA 지침(Guidance Manual) 채택
그룹감독	• 지주회사모델법규(#440, #450) 개정 • 감독협의체 구성 및 이행 문서화
감독 및 재무 회계	• 표준책임준비금모델법(#820) 채택; 가치평가지침(VM20) • 원칙중심 준비금 적립에 대한 현장영향평가 실시
재보험	• 재보험인정모델법규(#785, #786) 채택

자료: NAIC(2012).

- 현행 그룹감독에서는 보험지주회사 모델법규⁵³⁾와 NAIC 재무 분석 매뉴얼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NAIC는 그룹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한 창(clearer windows)과 그룹 내 위험 전이를 방지할 벽(walls)을 강화한다는 “Windows and Walls” 개념을 도입하였음.
 - 감독자들 간 의사소통 강화와 감독협의체 구성, 감독자의 정보 접근/집적, 이행강제권 강화, 그룹의 자본평가에 주력함.
- 특히, 자회사 성과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재정비하였음.
 - 전사리스크보고서(Form F)를 통해 보험그룹 내에서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회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자에게 부여함.

4. 일본의 보험그룹 감독

- 일본의 보험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 형태이며 일반사업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음.
 - 1997년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
 - 단, 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을 적용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는 없음.
- 일본의 보험그룹 감독은 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1998년 연결 기준 공시제도 정비

53)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Model#440) and Model Regulation (Model#450)

○ 2008년 이해상충 관리체제 구축

- 보험그룹의 적정한 정보관리 및 적절한 내부관리 체제의 정비를 실시

○ 2010년 연결 재무 건전성 기준 도입

- 2012년 3월부터 적용 예정

■ 연결 재무건전성 기준 도입으로 보험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보험그룹 전체를 하나로 연결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함.

○ 금융 위기의 교훈으로서 그룹 내 업체의 경영 악화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10년 5월에 도입하여 2012년 3월부터 적용함.

- 2012년 3월 말 이전에는 개별보험회사 각각에 대해 건전성을 규제함.

〈표 Ⅲ-6〉 일본의 보험회사 그룹경영에 관한 최근 주요 제도 개정

연도	개정 내용
1995	• 생명보험의 손해보험 자회사, 손해보험의 생명보험 자회사 보유 허용 • 보험회사에 의한 다른 보험회사 보험 산업의 업무 대리 등의 허용
1997	• 보험 지주 회사의 허용
1998	• 보험회사와 은행·증권 간의 자회사 방식에 의한 참가 허용 • 연결 기준 공시 제도 정비
2001	• 자회사의 종속 업무와 금융 업무 겸영의 허용
2003	• 자금 대출 등 다른 금융업을 행하는 업무 대리 등 허용
2004	• 보험 회사의 증권 중개 업무의 허용 • 신탁 전문 회사의 자회사 허용
2005	• 보험회사 본체의 은행 대리업의 허용
2008	• 보험회사 본체의 배출권 거래의 허용 • 보험회사의 자회사의 이슬람 금융 허용 • 이해상충 관리체제 구축
2010	• 연결 재무 건전성 기준 도입
2011	• 보험 회사 본체의 금융리스 거래 허용 • 그룹의 다른 보험회사 등 금융 기관의 업무 대리 등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적용 대상은 보험지주회사 및 보험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모든 보험그룹
 - 그러나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계산은 제외하고, 소액 단기 보험 대리점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에 대한 규제 도입은 당분간 보류함.
- 연결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범위는 회계 처리에 준하나, 금융 자회사(은행, 증권 등의 자회사)는 항상 지급여력비율 계산에 포함함.
- 지급여력의 계산은 연결 재무제표의 순자산에 바탕으로 하나의 회사에 대한 지급여력 계산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함.
 - 영업권 등은 순자산에서 공제함(은행 규제와 형평을 맞춤).
 - 해외 보험 자회사 등 각종 준비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규제에서 산입이 인정되는 경우에 산입함.
- 해외 보험 자회사 등의 요구자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별 회사의 요구자본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 그러나 보험위험, 최저보증리스크 및 자산운용위험은 연결 지급여력비율 고유의 위험 계산 방법으로, 간편법 및 해외규제에 따른 위험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도입함.
- 다른 업종(은행 또는 증권 회사 등)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자회사는 당해 건전성 규제의 요구자본의 사용을 허용함.

■ 또한, 보험지주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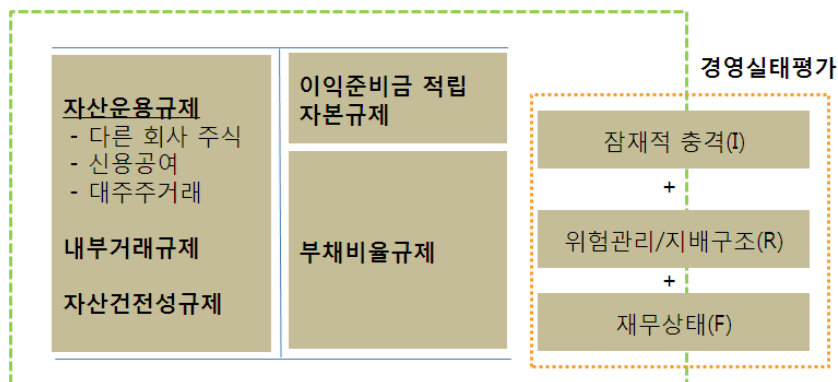
- 보험지주회사 그룹에서는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가 없으나, 개별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적용함.
 -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 및 동일인 자신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총자산의 10%,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총자산의 6% 임.
- 보험회사는 특정관계자 및 이들 특정관계자의 고객 사이에 부당한 거래 및 행위를 금지함.
 - 특정관계자란 당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당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IV.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1. 재무건전성 규제 및 감독 현황

- 보험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자회사들 간의 리스크전이,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상시감독(FRI)이 이루어지는 체계임.
- 지주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 간의 신용 공여 및 출자 제한 등의 차단벽 설치를 통한 리스크 전이를 방지함.

〈그림 IV-1〉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규제 및 감독 현황



-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자회사 출자 하한, 신용공여 및 주식취득 등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경제력 및 리스크 집중을 방지함.
- 지분 제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는 5% 이내
- 부채 비율: 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이익준비금: 매기 순이익의 10% 이상을 자본금 한도로 적립

-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자산운용규제와 자본규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산운용에서는 자회사와 더불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임.
- 해외 사례는 자산운용규제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위험자본금을 부과하는 리스크중심의 규제 비중이 커지는 추세임.
- 국내 건전성 감독도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자본규제를 통한 간접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그림 IV-2〉 보험지주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틀



- 금융지주회사법(2009)은 보험지주회사와 비금융자회사 등과의 불공정거래와 부실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지주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규제함(김흥기 2010).
- 대주주 등과 보험지주회사 간 거래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와 절차적 규제를 제시함.
 - － 한편,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현장검사 근거를 마련함.⁵⁴⁾
- 다만,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에서 담보확보의무를 배제함.

54) 금융지주회사법 제37조(비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의 특례).

- 독일의 그룹 전체 신용공여의 10% 이상이 동일 투자대상에 집중될 경우 분기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 규제에 대해서는 동일인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가 보험자회사는 물론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됨.

- 지주회사의 동일 개인 및 법인: 자기자본순합계액의 가중평균비율⁵⁵⁾
- 지주회사의 동일 차주: 자기자본순합계액의 가중평균비율⁵⁶⁾
-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 출자자 신용공여한도
 - 주요 출자자: 금융그룹 자기자본순합계액의 가중평균비율⁵⁷⁾
 - 대주주: 일정금액⁵⁸⁾ 초과 시 이사회 사전승인, 금융위 보고 및 공시
 - 대주주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금융위 보고 및 공시
- 보험지주회사 내 보험회사와 지주회사 대주주와의 거래
 - 30일 전 금융위 사전 보고
 - 총자산 0.5% 이상 규모의 신용공여, 증권거래, 부동산, 용역거래 등
-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리스크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거래규제를 은행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함.⁵⁹⁾
 - 자회사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능
 -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규제 및 담보확보의무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함.

55) 업종구분비율(종금/금투 20%, 보험 60%)을 자회사 등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56) 업종구분비율(종금/금투 25%, 보험 240%)을 자회사 등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57) 업종구분비율(종금15%/금투 0%, 보험 40%, ...)을 자회사 등 자기자본으로 가중평균.

58) Min(자기자본순합계액의 0.1%, 10억 원).

59)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간 출자를 금지하고,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기준으로 개별 10%, 지주회사 전체 20%를 한도에서만 허용하고 대신 담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의 진단 및 평가

가. 개별기업 단위의 자기자본규제의 한계

- 보험업과 은행업, 금융투자업의 국제감독자기구가 모인 공동포럼(Joint Forum)은 여러 금융업으로 이루어진 금융그룹의 지급능력평가에 대하여 연결기준 합산방식, 리스크기준 합산 또는 차감(공제)방식을 제시한 바 있음.
 - 연결방식은 법적으로 다른 실체를 상호의존적인 개별 실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체로 간주하여 내부거래를 제거함.
 - 합산방식은 개별 실체를 인정하나 내부거래를 조정하여 자본을 합산하고, 개별 기업 간 평가기준이나 자본요건이 다르므로 상호 조정이 필요함.

〈그림 IV-3〉 공동포럼이 제시한 지급능력평가



자료: Joint Forum(1999).

-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자본규제는 공동포럼에서 제시한 틀을 준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개별기업 단위의 접근방식에 머물러 있음.
 -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시 그룹 내 각 금융업권별 자본규제에 따라 산출된 요구자본을 단순 합산하고 있음.
 - 또한, 보험그룹 내 비금융자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은 자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위험도 평가라기보다는 비금융자

회사 소유를 억제하는 페널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은행지주회사의 요구자본은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적용하고 있어 외형상 단일 기준에 따라 요구자본이 산출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국내 지주회사의 자본규제는 은행과 비은행이라는 지주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고 있을 뿐 경제적 실체를 구분하지 않아 그룹이 노출된 리스크양은 과소 또는 과다하게 산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개별 자본규제의 단순 합으로만 계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단위의 개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반면, 그룹 전체를 하나로 보아 요구자본을 계산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상이한 경제적 실체들이 은행업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기업 단위의 또 다른 예에 불과함.
 - － 그룹 내 은행업이 아닌 자회사의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요구자본 산출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 단, 향후 그룹 내 타 금융권역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를 반영할 수 있는 자본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결과적으로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 자본규제는 개별기업 단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또한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이 개별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감독조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감독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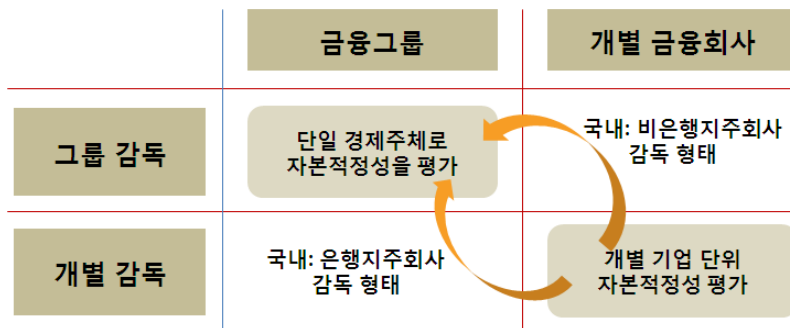
- 다른 금융권역 감독자들 간 감독 협력 및 정보교환이 용이하도록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체계를 정비함.

나. 경제적 실체에 기초한 요구자본 산출 필요

■ 향후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요구자본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그룹 내 경제적 단위에 따라 평가되고, 그룹 내 비금융회사가 그룹에 미칠 리스크도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자본규제가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보험지주회사와 보험회사 등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그룹 내 다른 금융업이나 비금융자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EU Solvency II의 모델을 검토해야 함.

〈그림 IV-4〉 국내 금융지주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방향



자료: IAIS ICP23(Group Supervision)의 감독 형태를 수정 인용함.

- 이는 서로 다른 금융업에 대한 동일한 리스크평가와 동일한 자본부과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송옥렬 2010).
 - 여러 금융업을 “상품과 기능의 조합”에 따른 다양한 사업모형의 발생이라고 본다면 동일 리스크에 동일 자본을 요구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나 동일 기준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오히려 동일 자산이라도 어느 포트폴리오에 있느냐에 따라 리스크를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임.

다. ORSA를 통한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정착 유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량모형에 치우친 감독에 대한 반성으로 리스크관리의 절차와 질의 모니터링수단으로 등장한 ORSA가 주목받고 있음.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주도하는 틀에서 전사적 리스크관리(ERM)를 통해 지주회사 스스로 그룹 운영에 필요한 적정 자본을 관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방식(ORSA)으로 감독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 IAIS는 국제감독기준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와 보험그룹에 정기적인 ORSA 시행과 그룹 내 계열사에 의한 리스크까지 ORSA에 반영할 것을 요구함.⁶⁰⁾
 - － 또한 ORSA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⁶¹⁾
 - － EU Solvency II의 ORSA 지침 역시 ORSA가 리스크관리의 일부이므로 일상 책임은 리스크관리기능에 있으나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있음을 명시함.⁶²⁾
 - 한편 EU Solvency II의 ORSA 지침은 그룹 ORSA와 그룹단위 ORSA를 구분함.
 - － 그룹 ORSA는 그룹 내 모든 자회사를 포함하여 그룹의 구조와 리스크 특성을 반영함.
 - － 그룹단위 ORSA는 그룹 차원은 물론이고 그룹 내 자회사 차원에서도 ORSA의 시행을 고려함.
 - － 둘 중 어느 ORSA를 적용할 지는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 따라서 그룹 리스크특성에 영향을 주는 그룹 내 모든 회사는 소유 기준과 관계없이 그룹 ORSA에 포함되고, 별도로 규제되는 자회사 등은 개별 ORSA를 시행하는데 사전 협의에 따라 그룹은 그룹단위 ORSA를 시행함.

60) ICP 16(ERM), 문단 16.11, 문단 16.13.

61) ICP 16(ERM), 문단 16.12.

62) EIOPA(2011), EIOPA Consultation on the ORSA.

■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 역시 보험지주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가 내부화 되도록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ORSA의 도입이 필요함.

○ ORSA는 한 번의 검사나 하나의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지주회사 리스크관리체계의 핵심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재 국내 보험지주회사 감독은 그룹단위 평가에 필요한 틀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본 및 리스크관리 평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IV-1〉 국내 보험그룹 재무건전성 감독의 진단 및 평가

	기준	목표	비고	평가
그룹 감독 체계	그룹단위	경제적 실체로서의 그룹	개별 + 그룹 동시 감독	△
	그룹감독 조직	그룹감독자 지정, 감독협의체 구성	정보공유 + 협력	×
	비금융 자회사	보험회사에 리스크 노출이 있으면 감독에 편입	정보접근, 검사	△
자본 평가	가용자본	연결기준 가용자본 산출	연결기준	△
		비지배지분 가용성 평가 등 자본의 질을 반영	가용성 + 대체성	×
	요구자본	분산효과 반영한 그룹 전체 리스크양 산출	분산효과	×
전사적 리스크 관리 평가	전사적 위험관리 (ERM)	그룹 자체의 리스크 평가와 적정 자본 관리	미래지향적 위험관리	△
	감독목적 ERM 시행 및 보고	ORSA 기준 마련	—	×
	감독체계	보고내용의 효과적 평가와 감독	—	×

주: △은 현재 시행 중이나 그룹감독 기준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

V.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1. 그룹단위 감독체계 수립

가. 경제적 실체로서의 보험지주회사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감독은 개별회사에 대한 감독에 치우쳐 그룹 단위감독에 대한 틀이 미비한 상태임.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이 주로 대형 은행지주회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은행 자회사가 이들 은행지주회사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함.
 -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감독도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의 틀에서 이루어 지나 그룹단위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AIS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금융그룹에 대해 그룹단위감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는 있는 시점임.
 - 또한 EU의 Solvency II 등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룹단위감독을 도입 하는 과정에 있음.

나. 그룹단위 감독체계의 도입

-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험지주회사 등의 감독에서 보험그룹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그룹단위 감독체계를 도입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임.

- 금융정책 및 감독당국의 그룹단위감독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임.
 - 비금융자회사 등 관련회사도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노출(risk exposure)이 있는 경우, 그룹단위 감독체계 안에 편입시켜 리스크의 전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조직체계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음.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는 금융지주회사의 인가·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금융그룹의 감독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산하 금융지주회사감독팀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경영분석, 소유지배구조 및 업무위탁 등의 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금융정책 입안자는 효과적인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그룹감독자들의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고, 감독당국은 보험지주회사의 그룹단위 감독자의 지명과 관련 감독자들 사이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체계를 수립해야 함.
- 개별회사 단위 감독을 보완하는 그룹단위감독을 통해 자회사 감독자 간 협조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개별회사단위 감독의 사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지주회사의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그룹단위감독을 총괄하고, 각 개별회사 단위 감독자들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큼.
 - －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그룹감독자의 지명과 감독협의체 설립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소속 회사의 개별감독자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효과적인 그룹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국내 보험그룹의 형태가 아직 지주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유럽이나 미국의 규제 및 보험그룹 감독체계를 한국의 보험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여 그룹단위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투명성⁶³⁾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자본 평가

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그룹단위 자기자본 규제

-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규제는 금융업권별 자기자본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개별 금융회사 단위의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그대로 사용함.

- 은행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개별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8%의 BIS 자기자본비율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은행지주회사 전체를 은행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은행지주회사에서 타 금융권역 자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 증권, 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자회사의 자기자본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개별 기업단위에서 산출된 요구자본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금융그룹의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음.

63) 보험핵심원칙 23.5에서 요구하듯 그룹단위감독을 저해 않는 충분한 투명성을 갖도록 보험그룹 구조의 변화를 유도함.

-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도 금융그룹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은행지주회사의 자본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개별 감독 형태여서 이를 그룹단위감독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나. 연결기준에 의한 자기자본 산출

- 금융그룹의 요구자본은 그룹 전체가 가지는 리스크를 반영해야 하고, 가용자본의 경우에도 다중계상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룹단위 연결기준 사용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자본산출방법으로 볼 수 있음.
- 금융그룹 관련 회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하여 금융그룹에 미치는 리스크 노출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을 사용하여야 함.
- 특히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회사까지 연결하여 보험그룹을 하나로 보는 연결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다. 자본산출방식의 개선

1) 분산효과 고려

- 그룹단위에서 지급능력을 산출하는 가장 큰 이점은 개별회사 방식을 지급능력 산출이 파악하지 못하는 리스크의 분산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임.
- EU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에서 보듯이 Solvency II의 그룹단위 지급능력 산출은 그룹 내 분산효과를 반영하여 요구자본의 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효과는 대형 금융그룹의 경우 보다 두드러짐.

- 우리나라도 지급능력 평가 시 이와 같은 분산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고려하여 보험지주회사의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유럽의 예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분산효과를 고려한 요구자본 산출을 통하여 특히 대형사의 자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자본의 질에 대한 고려

- 지급능력 평가를 위한 가용자본의 산출에 있어서도 대체성과 가용성을 고려한 자본의 질을 고려하여야 현실에 맞는 지급능력평가가 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자본의 손실보전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여야 위기 시의 실제로 가용한 자본을 통한 실질적인 지급능력이 발현될 수 있음.

3. 상시감독수단으로서의 ORSA 도입

- 보험회사의 전사적리스크관리(ERM)를 감독과 연결시키는 ORSA는 보험그룹에 대한 효과적 감독수단임.
 - 보험그룹의 리스크관리는 그룹 경영진이 자체적인 리스크의 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에게 감독 목적의 전사적리스크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수행을 요구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ORSA 적용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적임.
 - 단,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이 감독당국이 활용할 선제적인 위험관리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미국 SMI와 EU Solvency II가 상이한 태도를 보임.

- ORSA는 보험회사가 미래지향적으로 자사의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고 경영 유지에 필요한 적정 자본 수준을 판단하는 일련의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체계⁶⁴⁾라고 할 수 있음.
 - ORSA는 시나리오에 기초한 위기상황분석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험그룹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임.
 - 이는 새로운 모형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위험관리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대형 회사들의 경우 이미 전사적 위험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RBC제도가 표준모형에 의한 일률적 규제에서 개별 보험회사의 내부 위험관리모형을 인정하는 내부모형제도도 허용하는 변화와 일맥상통함.

- 또한 오로지 보험그룹 관점에서 자사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내 RAAS⁶⁵⁾와 같은 정형화된 기준을 가지지도 않음.
 - 다만, 비교가능성을 위해 일부 사전에 지정한 시나리오를 ORSA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64) 이런 의미에서 ORSA는 규제보다 상시감독에 가까움.

65)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또는 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은 RBC의 연장선상에서 감독당국이 정한 항목에 대한 기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보다는 규제에 가깝고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음.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1), 「201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8),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
- _____ (2011), 「메리츠 금융지주 설립인가 등」.
- 김정렬(2003),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와 리스크관리』,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 김흥기(2010. 6),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권 제1호, pp. 37~67.
- 송옥렬(2010), 『금융그룹에서의 법인격과 자기자본규제의 의미』, 한국금융연구원.
- 신보성 · 송홍선(2008), 『금융투자지주회사 제도 도입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 안철경 · 민세진(2006),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규제 연구」, 『보험학회지』, 75.
- 안철경 · 이상우(2006),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보험연구원.
- 이건범 · 김우진(2005),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이민환 · 전선애 · 최원(2009. 4),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보험연구원.
- 이승준(2011. 1), 「IAIS의 공통감독체계(ComFrame) 논의와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2012. 11),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변화 및 시사점』, 정책보고서 2012-3, 보험연구원.
- 정재욱 · 이석호(2009),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15(1), 한국금융연구원.
- 조용운(2010. 6), 「미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및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2004), 『금융법 체제 개편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향』.

FSB(2011. 11), “Policy Measures to Addres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____(2012. 11), “Update of group of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G-SIBs)”.

IAIS(2011. 6), “Group-wide supervision”, IAIS Global Seminar.

____(2012. 5),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 Identification of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____(2012. 7), “Working Draft of th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____(2012. 10),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Proposed Policy Measures”,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Joint Forum(1999. 12), “Risk Concentration Principles”.

_____(2010. 1), “Review of the Differentiated Nature and Scope of Financial Regulation”.

_____(2011. 12), “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Consultative Report, December.

NAIC(2012), “Regulators Adopt Solvency Work Plan”.

____(2012. 12),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Roadmap”.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 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 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 11
- 210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 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 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⑩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 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2.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 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이 승 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lee@kiri.or.kr)

김 해 식

St. John's University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aeskim@kiri.or.kr)

조 재 린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jrincho@kiri.or.kr)

정책보고서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3년 5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 판 및
인 쇄 KM 고려문화사

ISBN 978-89-5710-164-3

정가 10,000원